주요국의 소비세제도 (Ⅰ)

– 부가가치세

프랑스 편

안 창 남
손 승 연

2019.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Ⅰ)

– 부가가치세

프랑스 편

안 창 남
손 승 연

2019.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서 언

〈주요국의 소비세제도〉는 〈주요국의 소득세제도〉에 못지않게 연구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이다. 특히 최근 주요국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소비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주요국의 소비세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정책입안자와 연구자에게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국의 소비세제도』의 전체 구성은 제1권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도, 제2권 주요국의 개별소비세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 제1권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우선 발간하고,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개별소비세제도는 추후에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도는 분량이 방대하여 국가별로 분권하되 전 6권 세트 형태로 출판한다.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및 유럽연합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유럽형 부가가치세와 다른 형태의 판매세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대신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근간이 되는 유럽연합을 추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주요국의 조세제도』와는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별 부가가치세제도를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및 통계자료도 제시하였다. 또한, 부록에 개별 국가의 부가가치세법 조문 목차를 수록하여 연구자들에게 해당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도 높였다. 다만, 조세제도 자체가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주요국의 소비세제도는 최소한의 길라잡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개별 국가의 최신 내용을 포함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OECD 홈페이지, 각국의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요 출판물 및 관련 법령정보를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무열 초빙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영국 편은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 일본 편은 요코하마시립대 국중호 교수, 호주 편은 건양대 최정희 교수, 프랑스 편은 강남대 안창남 교수와 손승연 프랑스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고, 유럽연합 편은 강남대 안창남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독일 편은 본인과 독일 세법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대자동차 유럽본부 이유향 세무팀장이 공동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 작성과정 중에 있었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감수 및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교정과 편집을 도맡아주고 회의를 준비해준 권선정 선임연구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목 차

Ⅰ. 부가가치세 개관 ····· 1
1.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 3
2.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13
3. 부가가치세 현황 ····· 18

Ⅱ. 납세의무자 ····· 21
1. 의의 ····· 23
2. 납세의무자 구분 ····· 26

Ⅲ. 과세거래 ····· 31
1. 과세대상 거래의 유형 ····· 33
2. 유상공급 ····· 39
3. 재화와 용역의 구별기준 ····· 40

Ⅳ. 과세표준 ····· 43
1. 일반원칙 ····· 45
2.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48
3. 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49
4. 자가공급의 경우 ····· 50

Ⅴ. 세율과 세액의 계산 ····· 51
1. 세율 ····· 53
2. 매출세액 계산 ····· 55
3. 매입세액 공제 ····· 55
4. 매입세액 불공제 ····· 58
5. 매입세액 안분공제 ····· 61
6. 의제매입세액 공제 ····· 71
7. 납부세액 계산방법 ····· 72

Ⅵ. 영세율과 면세제도 ····· 75
1. 영세율 ····· 77
2. 면세 ····· 77

Ⅶ. 과세거래의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 81
1. 공급장소 ····· 83
2. 공급시기 ····· 88

Ⅷ. 부가가치세 행정 ····· 89
1.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세지 ····· 91
2. 세금계산서 제도 ····· 94
3. 일반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102
4.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 ····· 104
5. 기장의무와 증빙작성의무 ····· 106
6. 사업자등록 ····· 107
7. 그룹 법인의 신고 및 납부 ····· 107

Ⅸ. 기타 ····· 109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111
2. 영수증 관련 연대납세의무 ····· 111

Ⅹ.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117

참고문헌 ····· 119

〈부록〉 프랑스 「조세일반법」상 부가가치세 내용 및 해당 조문 ····· 121

표 목차

〈표 Ⅰ-1〉 프랑스 부가가치세 변천 과정 요약 ····· 13
〈표 Ⅰ-2〉 조세일반법상 부가가치세 주요 내용의 구성 ····· 14
〈표 Ⅰ-3〉 부가가치 및 납부할 세액계산 방법 ····· 16
〈표 Ⅰ-4〉 프랑스 세목별 세수입 비교 ····· 18
〈표 Ⅰ-5〉 프랑스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 20

〈표 Ⅱ-1〉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 29

〈표 Ⅲ-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사례 ····· 38

〈표 Ⅴ-1〉 부가가치세 세율표 ····· 54
〈표 Ⅴ-2〉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요약 ····· 59
〈표 Ⅴ-3〉 납세할 세액 계산 구조 ····· 72

〈표 Ⅵ-1〉 면세거래 대상 요약 ····· 79

〈표 Ⅶ-1〉 용역의 제공장소(B2B) 거래 ····· 85
〈표 Ⅶ-2〉 용역의 제공장소(B2C) 거래 ····· 86
〈표 Ⅶ-3〉 용역 제공의 경우 과세장소 예외규정 ····· 87

〈표 Ⅷ-1〉 과세거래별 거래사실 성립일과 거래대금지급 성립일 비교 ····· 92
〈표 Ⅷ-2〉 송장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96
〈표 Ⅷ-3〉 부가가치세 지역별 신고기한 ····· 103

그림 목차

[그림 Ⅷ-1] 프랑스 내 송장 사본····· 98
[그림 Ⅷ-2] 전자 송장 사본····· 100

Ⅰ. 부가가치세 개관

1.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2.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3. 부가가치세 현황

Ⅰ. 부가가치세 개관

1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가.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

프랑스 부가가치세는 1917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현행 제도와는 달리 「지출세」 형태로 도입되었다. 지출세는 1917년 이전에 시행된 「소비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당시 소비세는 「단일세(taxe unique)」와 「누적세(taxe cumulative ou à cascade)」로 구분할 수 있다.[1)]

먼저, 단일세는 재화(생산품) 및 용역거래에 적용하였고,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였다.[2)]

이 제도의 장점은 징수절차가 매우 간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소매상이 판매가격을 조작하는 경우, 이 차액에 대한 단일세액은 소매상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누적세(taxe cumulative ou à cascade)는 단일세와는 달리 거래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되었다. 한편, 세부담을 급격한 증가를 조정하기 위해 단일세에

1) 부가가치세 도입배경은 Jean Lamarque · Olivier Négrin · Ludouic Ayrault, *Droit fiscal général(제4차 개정판),* LexisNexis, 2016, pp. 807~816까지를 요약하였다. 주된 내용은 Thierry Cours, Florence Bernal et Françoise Soulé, *Guide de la TVA,* 제4판, Groupe Revue Fiduciaire, 2018를 참조하였다.

2) 예를 들면, 거래 단계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최종소비자】일 경우,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1,000프랑에 판매하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구입가격에다 100프랑의 이익을 붙여서 팔며, 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200프랑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고 세율은 20%라고 하자. 이 경우 최종소비자 구입가격은 1,560프랑 【(1,000프랑+100프랑+200프랑)+(1,300프랑×20%)】이 된다. 이때, 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세금 260프랑(1,300프랑×20%)을 받아서 국가에 납부한다. 그 대신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단계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구조였다.

적용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다.[3)]

이 제도는 해당 세액이 단계별로 징수되어서 단일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으나, 세율이 높을 경우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단점도 있다. 아울러 거래단계가 많은 경우보다 거래단계가 적을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프랑스 부가가치세는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제도의 장점을 취하고 그 대신 단점은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나.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프랑스 부가가치세는 법률형태상, 사업자가 판매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판매세(taxe sur le chiffre d'affaires)'[4)]의 범주에 속한다. 이는 거래단계마다 일정한 세율로 부과하며 이는 최종소비자의 구매단계에까지 이르고, 거래 전(前)단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5)6)]

---

3) 각주 2)의 단일세의 사례를 준용하여서 누적세(세율은 10%로 가정함)의 계산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 대해 1,000프랑으로 판매한다면 총판매가격은 세금 100프랑을 포함하여 1,100프랑이 된다. 이후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100프랑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했다면 판매가격은 1,100프랑이고 여기에 10% 세율을 부가하면 총판매가는 1,210프랑【(1,100프랑+(1,100프랑×10%)】이 된다. 만일 소매상이 200프랑의 중간이윤을 덧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판매가는 1,410프랑이고, 여기에 세율 10%를 더하면, 최종소비자의 구매가액은 1,550프랑(1,410프랑+140프랑)이 된다.

4)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turn-over taxes'가 된다.

5) 같은 의미로 유럽연합의 「2006년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 제1조 제2호 (n°2006/112/EU)를 들 수 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Le principe du système commun de TVA est d'appliquer aux biens et aux services un impôt général sur la consommation exactement proportionnel au prix des biens et des services, quel que soit le nombre des opérations intervenues dans le processus de production et de distribution antérieur au stade d'imposition. A chaque opération, la TVA, calculée sur le prix du bien ou du service au taux applicable à ce bien ou à ce service, est exigible déduction faite du montant de la taxe qui a grevé directement le coût des divers éléments constitutifs du prix. Le système commun de TVA est appliqué jusqu'au stade du commerce de détail inclus.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TXT/?uri=CELEX:32006L0112)

6) 유럽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s communautés européenne: 이하 'CJCE'라 함) 판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부과하며 ②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부가가치세의 개념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유럽연합의 「2006년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 제401조에서 회원국이 부가가치세와 성격이 '다른'보험세, 도박장세, 등록세 등의 유지나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7)]

프랑스 부가가치세는 1954년 4월 10일 법률 n°54-404에 따라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전에도 현재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형태의 판매세가 실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8)]

1) 1917년 지출세

1917년 12월 31일 법률에 따르면 3가지 종류의 지출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업적 지급거래에 대한 지출세(une taxe sur les paiements civils)[9)] ② 상업적인 지급거래에 대한 지출세(une taxe sur les paiements commerciaux)[10)] ③ 사치성 재화 및 이와 관련한 용역에 대한 지출세(une taxe sur les biens et services dits de luxe)[11)] 가 있다.[12)]

비상업적 지급거래에는 주식이나 채권(titres) 거래가 있고 상업적인 지급거래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해당하며, 거래단계 중 최종단계에서만 과세한다.[13)]

의해 각 거래단계마다 일정한 세율로 거래징수하고 ③ 거래징수를 당한 사업자는 이를 공제하며 ④ 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CJCE, Gde ch., aff. C-475/03, 2006년 10월 3일).

7) 원문: Sans préjudice d'autres dispositions communautaires, l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directive ne font pas obstacle au maintien ou à l'introduction par un État membre de taxes sur les contrats d'assurance et sur les jeux et paris, d'accises, de droits d'enregistrement, et, plus généralement, de tous impôts, droits et taxes n'ayant pas le caractère de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à condition que la perception de ces impôts, droits et taxes ne donne pas lieu dans les échanges entre États membres à des formalités liées au passage d'une frontière.

8) 참고문헌: 안창남, 「EU 회원국과 프랑스와 부가가치세의 조화과정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제23집 제2호), 2007, pp. 282~286.

9) 해당 법률의 제19조 내지 제22조.

10) 해당 법률의 제23조 내지 제26조.

11) 해당 법률의 제23조 내지 제26조.

12) 이 법률은 1871년 8월 23일 법률에 따라 도입된 인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이 법률은 1914년 7월 15일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정되었다).

그러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세대상 거래는 비상업적 거래 중 10프랑 이상의 거래를, 그리고 상업적인 지급거래 및 사치성 재화와 용역거래 중 150프랑 이상의 거래에 대해 과세하며, 적용세율은 0.2%이나 사치성 거래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한다.

그런데 최종거래 단계에서만 한 번 과세(taxation unique)하고 있어서 이를 회피하거나 감추는 거래가 성행하였다.[14]

2) 1920년 판매세

프랑스는 1920년 6월 25일 법률에 따라 「판매세(taxe sur le chiffre d'affaires)」라 불리는 간접세를 도입하였다.[15]이 제도는 앞선 1917년의 지출세와는 달리,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단계의 거래에 대해 과세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판매를 위해 사는 자, 소득세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거래하는 자 및 기업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하였다.[16]

판매세 납세의무자는 매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였으나, 소규모 사업자는 협의과세(forfait)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거래의 단계마다 1~1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를 산 사업자에게 해당 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른바 누적 과세(taxation en cascade)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17]

따라서 거래단계를 축소하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어, 1917년의 세제와 마찬가지로 거래단계를 감추거나 고의로 축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13) 이로 인해 누적 과세(cascade)는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

14) 이로 인해 과세대상 거래 규모는 10억프랑 정도지만 실제 과세대상에 포함된 거래는 1억 6천만프랑이라고 한다(출처: J. Laferrière et M. Waline, *Traité élémentaire de science et de législation financières*, LGDJ, 1952, p. 553).

15) 이의 시행은 1920년 7월 1일부터였다.

16) 이 제도는 1934년 12월 31일 법률에 따라 「판매세 및 단일세(taxes uniques)」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17) 이 영향으로 1922년에는 판매세 세수입이 23억 프랑, 1926년에는 74억 프랑, 1929년에는 135억 프랑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품에 대한 「단일판매세(taxe unique à la productio n)」가 도입되었다.[18] 즉, 거래단계 중 한 번만 부과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1924년에는 판매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품에 대한 단일세(taxe unique spéciale à la production)」를 신설하였다. 이 세금은 생산품의 거래 과정 중 한 번만 대해서만 과세하였다. 또한, 수출거래에 대한 완전한 면세와 수입거래에 대한 예외 없는 과세 및 납세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정의 복잡함 및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이 임박함에 따라 이 제도가 대폭 개정되었다.

3) 1936년 생산품세

1936년 12월 31일 법률에서는 1920년도의 판매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최종 거래단계에서만 재화의 공급가액에 6%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2%를 부과하는 「종합생산품단일세(une taxes uniqies global à la production)」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자부터 판매상까지 거래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누적과세로 인한 가격 인상의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19]

반면, 세수입 부족을 느낀 과세당국은 1920년대 판매세 방식을 모델로 하여 모든 상업거래에 대해 1%세율을 별도로 추가하는 세법개정안 하원에 제출하였고[20] 194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1941년 11월 6일 법률에 따라 도입된 소매상과 용역제공자에게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21]

이런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948년 9월 25일 데크레(décret)[22]에서는

18) 예를 들면 설탕세, 유황세 등이 있었다.
19) 1936년 관련 법률 제12조.
20) 이를 1939년 4월 21일 법규명령(décret-loi)라고 하며, 194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1) 이 제도는 1955년 4월 30일 법규명령 n°55-465에 의해 폐지되었다.
22) 데크레란(décret)란 대통령이 발하는 것으로, 프랑스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국정 수행을 위하여 법률의 소관 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일정한 기간 법규명령(décret)으로써

원자재 단계에서 생산품 완성단계에 이르는 동안, 대가를 주고 원자재를 구입한 납세의무자는 그 대가에 포함된 종합생산품 단일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거래단계별 징수체계(paiements fractionnés)」가 도입되었다.

이는 거래단계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내도록 하였다. 즉, 이는 현행 전단계 세액 공제방법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는 자본재 구매분이 포함되지 않았다.[23]

4) 1954년 부가가치세 도입

1954년 4월 10일 법률 제 n°54-404에 따라, 1936년도부터 시행한 종합생산 판매단일세를 폐지하고 '산업 또는 상업거래'와 '용역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세목은 종전의 생산세와 달리 투자세액, 장비, 원재료 등 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전단계 매입세액의 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산업 또는 상업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세율 16.85%와 감면세율 7.5%를 적용하고,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8.5% 세율을 적용하였다.[24] 이른바 현대적 의미의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되고(매입세액 공제에 따라 낙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데 종전보다 이점이 있으므로) 조세 중립성(neutralité fiscale)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제1항), 위 법규명령은 국정자문기관인 국사원(Conseil d'Etat)의 의견 청취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법원성이 인정된다. 아무튼 생산품세가 지니는 약점은 과세관청이 수많은 판매상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후술하는 1954년도 부가가치세 도입에 영향을 미쳐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23) 그러나 적용대상이 생산품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부가가치세 적용대상과는 구별된다.

24) 이 세율은 1955년 1월 1일부터 각각 0.5%p씩 상향조정되었다.

그 이유는 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종전에는 중간단계 거래상에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만 부담하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최종소비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1966년 1월 6일 법률 n°66-10에 의해 폐지되었다.[25] 한편, 농산품거래와 비상업적 용역거래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후, 1966년 1월 6일 법률에 따라 이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부가가치세 세무행정이 간소화되었으며, 면세거래가 대폭 축소되었다.

5) 프랑스의 CEE 1979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수용

유럽의 공동체 시장 건설을 위해서는 회원국 사이의 거래에 대해 서로 중복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의 조화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당시 CEE)에서는 판매세에 대한 지침(directive)이 필요했는데, 이 지침은 당시 시행 중이던 프랑스 부가가치세제를 모델로 하였다.[26]

1967년 4월 11일에 발표된 제1차 지침(n°67/227/CEE) 이후 여러 차례의 지침이 발표되었고, 특히 1977년 5월 17일 제6차 지침(n°77/388/CE)과 이를 개정한 2006년 11월 28일 제6차 지침 수정안(n°2006/112/CE) 및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권의 범위를 정한 2008년 2월 12일 제6차 지침 수정안(n°2008/8/CE)은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25) 이 제도는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6) Jean Lamarque, Olivier Négrin, Ludovic Ayrault, *op.cit*, p. 812.

6)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른 프랑스 부가가치세법 개정

가) 세율조정

부가가치세 세율조정의 가장 핵심은 '최고 세율(taux majoré)'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당시 프랑스 부가가치세 세율을 EU 부가가치세 지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작업은 1987년 말부터 시작되었다.

1988년 재정법(n°87.1060, 1987. 12. 30)에 따라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3.1/3%는 28%로 조정되었고, 디스크와 카세트에 적용된 33.1/3%는 18.6%로 하향 조정되었다.

1989년 재정법(n°88.1149, 1988. 12. 23)에 따라 최고세율이 25%로, 1990년 재정법(n°90.1168, 1990. 12. 29)에 따라 22%로 그리고 1991년 재정법(n°91.916, 1991. 7. 26.)에 따라 이마저 1993년 1월 1일부터는 폐지되었다. 이때 명목상 남아 있던 '중간세율(taux intermédiaire)'도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정상세율(taux normal)'이 중간세율의 대체 세율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감면세율(taux réduits)'의 경우, 1989년 재정법(n°88.1149, 1988. 12. 23)에 따라서 당시 적용되고 있었던 7%와 '초감면세율(taux super-réduit)' 5.5%는 5.5%로 단일화되었다.

아울러 1990년 재정법(n°90.1168, 1990. 12. 29)에 따라서 5.5%가 적용되던 의약품(사회보장기구에서 환급되는 경우)은 2.1%로 낮추어졌다.

나) 과도적인 부가가치세 체계 수립

1993년 1월 1일 이후, EU 회원국 간의 거래는 수출과 수입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단계로 조정되었다. 자동차와 통신판매를 제외한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종전의 특별한 관리규정을 폐지하고 구매가격에 상관없이 판매지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대상 거래는 산업품 및 상업거래(도매업)에 국한되었고, 용역거래 등에 대해서는 「용역의 거래에 적용되는 소비세(taxe sur les prestations de services)」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제가 제정되었으며, 소매업과 수공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27]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과세체계를 해결하기 위해, 「1966년 1월 6일 법률 n°66-10호」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제가 도입(적용은 1968년 1월 1일부터임)되었는데, 이 법률은 "부가가치세제의 통일화, 간편화 및 일반화를 통한 소비세제의 현대화와 단일화(unifier, simplifier et généraliser le régime d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pour en faire un impôt moderne et unique sur la dépense)"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거래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프랑스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대부분의 농업거래와 비상업적인 거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유럽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로서 EU 역내 시장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제의 조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1967년 4월 11일 부가가치세 조화를 위한 제1차 지침을 프랑스 법체계에 수용하였다. 그 뒤 「1978년 12월 29일 법률 (n°78-1240)」을 통해서, 유럽공동체 국가의 부가가치세 조화를 위한 「1977년 5월 17일의 제6차 지침(directives)」의 내용을 프랑스 부가가치세법에 반영하였다. 이 결과로 대부분의 경제적인 거래(activités économiques)가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1987년 「유럽통합법(Acte unique européen)」에 따라서 유럽 내부 간 경제적인 국경의 폐지와 상품, 용역, 자본 및 인적 교류 촉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6차 지침을 개정한 새로운 지침 n°91/680/CEE(1991년 12월 16일)에 따라서 유럽 회원국 간의 거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지역과 지역

27) 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부가(附加)하여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지방소비세가 부과되었다.

간의 거래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1994년 2월 14일, 중고품, 예술품 및 수집품 등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 부가가치세제의 통합을 위한 유럽연합의 「제7차 지침 n°94/5/CE」이 발표되었고, 이 지침은 프랑스 부가가치세법에 「1994년 12월 29일 법률 n°94-1163」 제16조에 따라 반영되었으며 이 조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8)]

1995년 4월 10일 유럽연합 위원회의 제2차 지침(n°95/7/CE)은 부가가치세 세제의 간편화를 규정하고 있고, 이 지침은 「1995년 12월 30일 관련 법 n°95-1347」에 따라 조세일반법에 반영되었으며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은 2006년 11월 28일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2006/112/EC)을 제정(이하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이라 함)[29)]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은 부가가치세제의 단일화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으나, 세율, 면세거래의 범위, 신고 및 징수, 경정 등의 분야는 각 나라의 독자적인 입법권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와 대동소이하지만, 프랑스 특유의 법체계 운영에 따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07년 12월 7일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2007/111/EC), 2008년 2월 12일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규정(2008/8/EU), 2010년 7월 13일의 적격영수증 규정(2010/45/EU), 2011년 3월 15일의 전자용역의 공급 장소와 고정사업장 규정(2011/282/EC) 지침 등은 프랑스 부가가치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8) 1994년 9월 8일에 발행된 프랑스 재정경제부의 「예규통첩집(Bulletin Officiel de la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et Bulletin officiel des Impôts: 이하 'BO'라고 약칭함)」의 3 CA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s Européenne: 이하 'CJCE'라고 줄여씀) 및 국사원(Conseil d'Etat: 아래에서는 'CE'라고 함)의 판례 영향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재정의하고 있으며, 비과세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관련 판례 CJCE aff. C333/91, SATAM).

29) 원 법률명: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7) 화폐 통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단일통화(monnaie unique) 정책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프랑 화폐 대신 유로(EURO)로 변경하였다. 당시 15개 회원국 중 프랑스를 포함하여 11개 국가가 동의하였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는 그리스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부가가치세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Ⅰ-1 프랑스 부가가치세 변천 과정 요약

연도	관련 법률	법률명
1917	1917년 12월 31일 법률	지출세
1920	1920년 6월 25일 법률	판매세
1936	1936년 12월 31일 법률	생산품세
1954	1954년 4월 10일 법률	부가가치세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가. 부가가치세 법령체계

프랑스 세법은 세목별 법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법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 중 실체법에 관한 사항은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신고와 납부, 세무조사 등 절차적인 내용은 「조세절차법(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LPF)」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30]

30) 참고자료: 안창남, 『프랑스 조세절차법 연구』, 한국세무사회, 2001.

프랑스 조세일반법은 1950년도에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2000여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세절차법은 1980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약 250여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일반법과 조세절차법은 4개의 별도의 부칙 법전을 가지고 있다. 이중 부칙 Ⅰ은 국사원의 자문과 동의를 받아서 발표된 법규명령이고, Ⅱ는 국사원의 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모은 것으로 행정부와 하원에서 법원(法源)이 인정된 것을, 부칙 Ⅲ은 대통령령을, 부칙 Ⅳ는 부령을 모은 것이다.[31]

조세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중요 내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32]

표 Ⅰ-2 조세일반법상 부가가치세 주요 내용의 구성

조문	내용	비고
제1부	Première Partie: Impôts d'État	국세
제1편	Titre premier: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직접세
제2편	Titre II: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et taxes assimilées	간접세
제1장	Chapitre premier: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부가가치세
제256-0조	Section 0I: Définition du territoire communautaire	유럽연합의 적용지역
제256조-제263조	Section I: Champ d'application	적용범위
제266조-제268ter조	Assiette de la taxe	납세의무자
제269조	Fait générateur et exigibilité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제270조-제277A조	Liquidation de la taxe	부가가치세 징수

31) Jean Lamarque · Olivier Négrin · Ludouic Ayrault, *op.cit.* p.159. 한편 과세관청은 법령해석이나 질의응답을 한 내용을 BOFiP(Bulletin Officiel des Finances Publiques-Impôts)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 글에서 BOFiP로 시작되는 주소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예규와 성질이 유사하다. 이에 대한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bofip-impots-documentation-fiscale-en-ligne.

32) 조세일반법 편제의 일반적 사항: 안창남, 『주요국의 소득세 제도(프랑스 편)』 각주 10번 참조.

〈표 Ⅰ-2〉의 계속

조문	내용	비고
제278조-제281 nonies조	Taux	세율
제286조-제290 quinquies조	Obligations des redevables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의무
제291조-제293Abis조	Importations	재화의 수입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부가가치세 유형

프랑스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를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재 구입액 및 자본재 구입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금액은 개인의 총소비지출과 동일하다.

따라서 자본재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촉진효과가 있고,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33]

다. 부가가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다. 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지급한

33) 부가가치세 유형은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국민총생산형, 소득형 및 소비형으로 구분한다. 국민총생산형은 부가가치를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자본재+소비재)의 가치로 파악하는데, 이는 생산요소인 임금 · 이윤 · 지대 ·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인 국민총생산액과 동일하다. 소득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국민순생산, 즉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총소비액과 순투자액이 포함되나, 자본재 구입액과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는 공제한다. 이는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는 개인의 총소비지출액을 부가가치로 보아 과세를 한다.

임금 · 이자 · 지대 · 이윤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합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투입한 중간재를 공제하여 구하는 것이다.

한편, 공제법은 '전(前)단계 거래액공제방법'과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으로 구별하는데, 전자는 매출가액에서 매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공제법 중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리 제조업자 A가 유리를 가구 제조업자 B에게 80,000유로에 팔고, B는 유리를 이용하여 가구를 만들어서 가구 판매업자 C에게 120,000유로에 팔며, 소비자 D가 이를 216,000유로에 구입했다고 하자. 이때, 거래단계별 부가가치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된다.

표 Ⅰ-3 부가가치 및 납부할 세액계산 방법

(단위: 유로, 세율: 20%, 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유리 제조업자 A	가구 제조업자 B	가구 판매업자 C	소비자 D
구입액	0	80,000	120,000	216,000 (180,000+36,00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0	16,000 (80,000×20%)	24,000 (120,000×20%)	
판매액	80,000	120,000	180,000	
부가가치	80,000	40,000	60,000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6,000 (80,000×20%)	24,000 (120,000×20%)	36,000 (180,000×20%)	
납부할 세액	16,000	8,000 (24,000-16,000)	12,000 (36,000-24,000)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위 경우 부가가치 총액은 180,000유로(유리 제조업자 80,000유로+가구 제조업자 40,000유로+가구 판매업자 60,000유로)이고, 납부할 총세액은 36,000유로(부가가치 합계액 180,000유로×20%)이다.

한편, 각 사업자의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데 이의 합계금액은 36,000유로(유리 제조업자 16,000유로+가구 제조업자 8,000유로+가구 판매업자 12,000유로)이고, 결국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36,000유로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라. 생산국 과세원칙과 소비국 과세원칙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중 수출과 수입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치세를 어느 나라가 부과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생산국 과세원칙과 소비국 과세원칙이 있다.

생산국 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생산국(수출국)에서 과세하고 소비국(수입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비국 과세원칙은 그 반대의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재화의 수출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고[34],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프랑스 부가가치세 세율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어서(단, EU 역내 거래는 제외), 수입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우리나라도 동일하다).[35]

34)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고 있으나, 프랑스 「조세일반법」에서는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수출거래(EU 회원국 및 비회원국 포함)는 비과세 하되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수출 이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을 해주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과세 거래나 면세거래 내역을 신고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35) 결국 EU 역내 거래는 생산국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2006년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의 개정으로 종전에 시행중이던 EU 세수분배원칙은 삭제되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EU 부가가치세의 1997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의 카목 참조)

3 부가가치세 현황

가. 예산 점유비

프랑스의 2018년 전체 세수입은 3,368억유로이며 이 중 부가가치세 세수입은 1,689억유로로 전체 세수입액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목별로 구별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Ⅰ-4 프랑스 세목별 세수입 비교

(단위: 십억유로)

세목	1995		1996		1997		1998		199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TVA	89.4	50.2	96.1	50.6	98.9	50.2	101.9	50.2	106.0	48.8
담배세	6.4	3.5	6.5	3.4	6.7	3.4	7.0	3.4	7.0	3.2
소득세	42.6	23.9	43.3	22.8	40.4	20.5	42.6	21.0	46.1	21.2
법인세	21.5	12.0	24.3	12.8	29.7	15.0	31.0	15.2	36.0	16.5
부유세	1.3	0.9	1.4	0.9	1.5	1.0	1.7	1.2	1.9	1.1
자본세	4.3	2.4	4.8	2.5	6.1	3.1	5.6	2.7	6.6	3.0
기타	12.7	7.1	13.4	7.0	13.4	6.8	12.9	6.3	13.6	6.2
합계	178.0	100.0	189.8	100.0	196.7	100.0	202.7	100.0	217.2	100.0

세목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TVA	107.2	46.8	108.6	46.4	110.4	48.1	113.6	49.0	120.2	48.7
담배세	8.2	3.5	8.3	3.5	8.8	3.8	8.9	3.8	9.1	3.6
소득세	49.5	21.6	47.9	20.4	45.6	19.8	47.3	20.4	47.6	19.2
법인세	39.4	17.2	43.9	18.7	38.5	16.7	35.0	15.1	39.9	16.1
부유세	2.4	1.3	2.6	1.4	2.4	1.3	2.3	1.2	2.6	1.5
자본세	6.9	3.0	7.3	3.1	7.2	3.1	7.4	3.1	8.6	3.4
기타	15.3	6.6	15.2	6.5	16.6	7.2	17.2	7.4	18.7	7.5
합계	228.9	100.0	233.8	100.0	229.5	100.0	231.7	100.0	246.7	100.0

〈표 Ⅰ-4〉의 계속

세목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TVA	126.6	48.7	131.7	47.9	136.5	48.5	137.7	48.6	130.3	53.2
담배세	9.3	3.5	9.7	3.5	9.5	3.3	9.8	3.4	10.0	4.0
소득세	49.4	19.0	52.4	19.0	48.6	17.2	50.9	17.9	46.1	18.8
법인세	42.1	16.2	47.6	17.3	50.6	17.9	48.4	17.0	20.3	8.3
부유세	3.0	1.4	3.7	1.6	4.4	1.9	4.2	1.8	3.6	2.0
자본세	9.0	3.4	8.3	3.0	8.9	3.1	7.9	2.7	7.5	3.0
기타	20.3	7.8	21.2	7.7	22.9	8.1	24.4	8.6	26.3	10.7
합계	259.7	100.0	274.6	100.0	281.4	100.0	283.3	100.0	244.1	100.0

세목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TVA	135.6	50.9	140.6	48.8	142.5	47.3	144.5	45.4	148.5	46.8
담배세	10.8	4.0	11.5	3.9	11.8	3.9	12.0	3.7	11.9	3.7
소득세	47.0	17.6	50.8	17.6	59.5	19.7	68.6	21.5	70.1	22.1
법인세	33.2	12.4	41.9	14.5	42.0	13.9	44.1	13.8	36.1	11.3
부유세	4.5	1.9	4.3	1.9	5.0	2.1	4.4	1.7	5.4	2.0
자본세	7.7	2.9	10.3	3.5	9.6	3.1	10.5	3.3	10.4	3.2
기타	27.5	10.3	28.4	9.8	30.3	10.0	33.7	10.6	34.7	10.9
합계	266.3	100.0	287.8	100.0	300.7	100.0	317.8	100.0	317.1	100.0

세목	2015		2016		2017		2018		비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TVA	151.7	47.7	154.5	47.9	161.9	47.7	168.9	50.1	
담배세	12.1	3.8	11.9	3.6	12.2	3.5	13.1	3.8	
소득세	70.4	22.1	72.9	22.6	74.1	21.8	73.8	21.9	
법인세	31.1	9.7	30.4	9.4	35.3	10.4	28.5	8.4	
부유세	5.2	2.0	4.8	1.8	5.1	1.7	1.8	0.9	
자본세	12.3	3.8	12.5	3.8	14.3	4.2	14.4	4.2	
기타	34.8	10.9	35.2	10.9	36.3	10.7	36.3	10.7	
합계	317.6	100.0	322.2	100.0	339.2	100.0	336.8	100.0	

자료: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408#tableau-figure1(검색일: 2019.7.28.)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TVA)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에서 53%를 나타내고 있다.

나. 세율 변화

프랑스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Ⅰ-5 프랑스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단위: %)

	1968	1969	1970	1972	1977	1982	1988	1989	1990	1992	1995	2000	2012	2014[4]
Taux particulier (ou super réduit)	Néant					5,5	5,5	2,1	2,1	2,1	2,1	2,1	2,1	2,1
Taux réduit	6,0	7,0	7,5	7,0	7,0	7,0	7,0	5,5	5,5	5,5	5,5	5,5	5,5[N1]	5,5
Taux intermédiaire	13,0	15,0	17,6	17,6	Néant								7,0[N2]	10,0
Taux normal	16,66	19,0	23,0	20,0	17,6	18,6	18,6	18,6	18,6	18,6	20,6	19,6[N3]	19,6	20,0
Taux majoré	20,0	25,0	33,33	33,33	33,33	33,33	28,0	25,0	22,0	18,6	Néant			

주: Taux particulier(ou super réduit): 특수세율(초 감면세율); Taux réduit: 감면세율; Taux intermédiaire: 중간세율; Taux normal: 표준세율; Taux majoré: 특별세율
자료: https://fr.wikipedia.org/wiki/Taxe_sur_la_valeur_ajout%C3%A9e_en_France

프랑스 부가가치세율은 최고 20.0%부터 최하 2.1%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1977년의 정상세율은 17.6%인데 현재는 20.0%까지 인상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복수세율체계를 운용하고 있다.[36]

36) 납세의무자 현황 등 기타 부가가치세 관련 통계는, 우리나라 국세통계연보와는 달리,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여 발표하지는 않는다.

Ⅱ. 납세의무자

1. 의의
2. 납세의무자 구분

Ⅱ. 납세의무자

1 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독립적인 지위(manière indépendante)를 지니면서 경제적인 사업 활동(activités économiques)을 하는 자(personne)를 의미한다.[37]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의 법률적인 지위나 세법상 간주하는 형태 등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반면, 어느 거래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비사업자)에 의해 이뤄진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거래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38]

가. 독립적인 지위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용어의 뜻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인적 독립), 해당 사업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으로 하는 등 대외적으로 독립되어 있음(물적 독립)을 의미한다.[39]

예를 들면, 납세의무자의 종업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종업원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반면, 위임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라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은 경우 이를 독립적이라고 본다.[40]

---

37) CGI, 제256A조: Sont assujetties à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les personnes qui effectuent de manière indépendante un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mentionnées au cinquième alinéa, quels que soient le statut juridique de ces personnes, leur situation au regard des autres impôts et la forme ou la nature de leur intervention.

38) CJCE, n°291/92, 1995. 10. 4.

39) 우리나라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1274 판결 및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내용과 유사함.

반면, 노동계약에 의하거나 종속관계를 발생하는 노동계약, 보수의 지급 및 노동의 책임 등 종속관계가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41] 재택근무자(travailler à domicile)[42]의 경우 중 「노동법(code du travail)」 제721-1조, 제721-2조 및 제721-6조에 규정된 근로용역을 제공의 경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43]

나. 경제적인 사업활동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조세일반법」 제256A조 및 「2006년 제6차 지침」 제9조에 따른 경제적 활동이어야 한다. 경제적 활동이란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산업 또는 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활동(activité de nature industrielle ou commerciale, quels qu'en soient les buts ou les résultats)"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영리 목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 그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44]

이 범주에는 제조 활동, 상업 활동 또는 용역 활동, 광산, 농업 및 자유직업 활동과 이와 유사한 활동이 포함된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45]으로 유형재화(meuble corporel) 또는 무형재화(meuble incorporel)의 거래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경제적인 활

40) CE, n°21423, 1982. 2. 24. 그 대표적인 예로 독립대리인(les représentants libres)을 들 수 있다(BOFiP-TVA-CHAMP-10-10-20, 20/11/2013).
41) CJCE, n°366/06, 2007. 10. 18.
42) BOFiP-TVA-CHAMP-10-10-20, 20/11/2013.
43) CGI, 제256A조.
44) 만일 비영리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영리사업자에게만 있다고 할 경우, 전자는 후자보다 가격에서, 적어도 부가가치세액만큼 유리한 처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5) 고정적이라는 의미는 계속적 · 반복적인 사업활동을 뜻하고 일시적 · 우발적인 것은 제외한다. 통신판매 중 일시적 · 우발적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CJCE, aff. C-284/04, 2007. 6. 26.).

동으로 간주한다.[46]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일시적·우발적(occasionnel)인 처분(disposition) 형태가 아닐 경우, 이는 경제적인 사업활동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47]

또한, 일시적·우발적인 거래와는 달리, 비록 1년에 1회의 거래라고 하여도, 사업과 관련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필수적인 '일회적 거래(opération ponctuelle)'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정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48]

프랑스 국사원도 적시의 거래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견해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영업권의 양도(fonds de commerce), 발명가의 특허권 양도(brevet par un inventeur), 상표권양도(marque non exploitée)가 '필수적인 일회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인(personne)'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법인, 국가 등 공공법인, 기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사업자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46) CGI, 제256A조 cinquième alinéa: Les activités économiques visées au premier alinéa se définissent comme toutes les activités de producteur, de commerçant ou de prestataire de services, y compris les activités extractives, agricoles et celles des professions libérales ou assimilées. Est notamment considérée comme activité économique une opération comportant l'exploitation d'un bien meuble corporel ou incorporel en vue d'en retirer des recettes ayant un caractère de permanence.

47) Jean Lamarque · Olivier Négrin · Ludovic Ayrault, *op. cit*, p. 822.

48) Jean Lamarque · Olivier Négrin · Ludovic Ayrault, *ibid*, p. 823. 같은 취지로 「2006년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 제12조 제1항에서도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분, 건축용지의 공급 등을 일시적(occasional basis)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 구분

가. 과세대상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소비자와 해당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이 납세의무자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과세대상사업자'라고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면세사업자'로 구별하며, 두 가지를 겸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한다.[49]

나.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국가 등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아니다.[50] 「2006년 지침」 제13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Etat), 지방정부(région), 기타 공공기관(autres organismes de droit public)[51]의 경

49)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외형금액 중 90% 이상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일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에 4.25~13.6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급여세(taxe sur les salaires)」 과세대상이 된다(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2257).

50) 예를 들면, 관공서가 제공하는 행정용역, 교육용역, 문화용역, 스포츠 용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이 원칙적으로 면세가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51)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기준 설정에 대해 판례(CJCE, aff. C-231/87 및 C-129/88)는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objet)이나 수행하는 목표(but poursuivi)가 아니라 해당 거래가 수행하는 방법이나 형태(modalité d'exerce de l'activité)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Mischo 변호사는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거래 중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되기 위한 조건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① 공권력에 따른 거래(exercice du pouvoir de souveraineté) ②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만 하는 거래(exercice d'une activité obligatoire) ③ 법률(보통법)에 따른 과도한 특권의 사용(utilisation de prérogatives exorbitantes du droit commun) ④ 법적 독점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실행(exercice d'une activité faisant l'objet d'un monopole légal)이 있다(p. 835).

우에는 그들의 목적 수행을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2]

2)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국가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dans les conditions de la concurrence)'에는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포함된다.[53]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확정된(in concreto)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in abstracto)인 개념이며, 이는 거래가 되고 있는 같은 시기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54]

한편, 「조세일반법」에 따르면, 국가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스 · 전기 · 열에너지(énergie thermique) 공급,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재화의 운송, 판매장 운영, 운송용역(단,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운송용역은 제외),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업목적의 전시회, 항구와 공항에서 제공하는 용역, 재화의 저장용역, 여행용역,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재배포, 통신용역, 인구 3,000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국가 등 공공기관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55]

---

52) 이 조항은 「1977년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을 이어 받은 것이다.
53)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제13조 제1항 및 「조세일반법」 제256B조.
54) CE, n°307.856, 2010.12.23. 이는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그 거래가 민간기업과 경쟁관계가 있을 경우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다.
55) CGI, 제256B조: Ces personnes morales sont assujetties, en tout état de cause, pour les opérations suivantes: Livraisons de biens neufs fabriqués en vue de la vente,

다. 외국인 및 비거주자 등의 경우

프랑스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중 프랑스 내에서 독립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와 같은 활동이 프랑스 내에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된다.

라. 과세행정 편의에 따른 분류

부가가치세 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납세의무자의 유형은 '일반과세자(régime du réel normal)'[56], '간이과세자(régime du réel simplifié)'[57] 및 '납부면제자(franchise en base)'[58]로 구분한다. 이들 기준은 외형금액과 낼 세액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8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Distribution de gaz, d'électricité et d'énergie thermique, Opérations des économats et établissements similaires, Transports de biens, à l'exception de ceux effectués par la Poste, Transports de personnes, Opérations des organismes d'intervention agricoles portant sur les produits agricoles et effectuées en application des règlements portant organisation commune du marché de ces produits, Organisation d'expositions à caractère commercial, Prestations de services portuaires et aéroportuaires, Entreposage de biens meubles, Organisation de voyages et de séjours touristiques, Diffusion ou redistribution de programmes de radiodiffusion ou de télévision, Télécommunications, Fourniture d'eau dans les communes d'au moins 3.000 habitants ou par l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dont le champ d'action s'exerce sur un territoire d'au moins 3.000 habitants.

56) CGI, 제287조 제2항 및 제302septiesA조.
57) CGI, 제287조 제2항 및 제302septiesA조.
58) CGI, 제293B조.

표 Ⅱ-1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단위: 유로)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외형금액 기준			
재화의 공급, 숙박용역	789,000 초과	82,800 초과 789,000 이하	82,800 미만
기타 용역의 공급	238,000 초과	33,200 초과 238,000 이하	33,200 미만
납부할 세액 기준			
세액(1년 단위)	-	15,000 이하	-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만일, 간이과세자 중 납부할 세액이 15,000유로를 초과하면 그 다음연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한편, 과세관청은 간이과세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제도의 적용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제도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적어도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Ⅲ. 과세거래

1. 과세대상 거래의 유형
2. 유상공급
3. 재화와 용역의 구별기준

Ⅲ. 과세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유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이 있다.[59] 이와 같은 과세거래의 설정은 「2006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과세고권은 기본적으로는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진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거래의 경우에는 「2006년 지침」에 따라,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하여도 프랑스 과세고권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프랑스 밖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하여도 프랑스 과세고권에 포함되어 프랑스에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1 과세대상 거래의 유형

가. 재화의 공급

재화(biens)[60]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의미한다. 물건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은 물론 전기, 가스, 열 등을 포함하며,[61] 권리에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59) CGI, 제256조 제1항: Sont soumises à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les livraisons de biens et les prestations de services effectuées à titre onéreux par un assujetti agissant en tant que tel.

60) 영어 표현은 goods이다. 이를 '유체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해당 법조문에 무체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용어인 '재화'라고 번역한다.

61) CGI, 제256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재산적 가치라 함은 객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말한다.

재화의 양도에는 공공기관의 수용에 따라 유형재화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또는 할부판매계약에 따라서 유형재화를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재화의 소유권 양도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거나 최종적으로 대금이 지불되었을 때에 소유자에게 재화를 양도한다는 계약에 따라서 유형재화를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2]

그러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transmission d′une universalité)'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63]

한편, 「2010년 3월 9일 법률」(n°2010-237)에 따라, 부동산 거래는 법령이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포함되는데,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 및 '건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프랑스 납세의무자가 EU 회원국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재화를 공급[64]한 것으로 보지만[65], 이를 비과세 대상[66]으로 하고 있다.

---

62) CGI, 제256조 제2항 제3호.

63) 종전 「조세일반법」은, 「2006년 지침」 제19조의 규정과는 달리, 사업의 포괄양도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이후 「조세일반법」을 개정하여 제257bis조에 이를 명확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Les livraisons de biens et les prestations de services, réalisées entre redevables d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sont dispensées de celle-ci lors de la transmission à titre onéreux ou à titre gratuit, ou sous forme d'apport à une société, d'une universalité totale ou partielle de biens). 한편, 국사원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100%가 아닌 30%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았다(CE, n°375.055, 2015. 11. 23.)

64) 다시 말해, 수출거래로 보지 않는다.

65) CGI, 제256조 제3항: Est assimilé à une livraison de biens, le transfert par un assujetti d'un bien de son entreprise à destination d'un autre Etat membre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66)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내역을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비과세 대상'과는 구별기준이 다르다고 본다.

나. 용역의 공급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서비스 및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한다. 「2006년 지침」 제24조 제1항은 용역이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로서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7]

용역이란 「조세일반법」 제256조 제2항에 열거된 재화의 공급 이외의 거래, 자유직업과 관련된 용역,[68] 특히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 사용허락, 가공 및 건물공사를 포함한다.[69] 자유직업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동산의 임대는 해당 재화가 신품 또는 중고품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부동산 임대의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차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임대한 동산, 장치, 사무실 등의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나대지의 임대는 설혹 해당 나대지가 임대인의 사업목적에 이용된다고 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70]

또한, 가구가 딸린 주택(logement meublé)의 임대용역(거주목적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71]

교육용역의 경우, 공교육 과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67) 원문: Est considérée comme «prestation de services» toute opération qui ne constitue pas une livraison de biens.

68) 단, 의료용역 중 공익목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9) CGI, 제256조 제4항 제1호: Les opérations autres que celles qui sont définies au II, notamment la cession ou la concession de biens meubles incorporels, le fait de s'obliger à ne pas faire ou à tolérer un acte ou une situation, les opérations de façon, les travaux immobiliers et l'exécution des obligations du fiduciaire, sont considérés comme des prestations de services.

70) CGI, 제261D조 제2항.

71) CGI, 제261D조 제4항. 그러나 호텔, 관광업소 등에서 제공되는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다.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프랑스 이외의 국가로부터 프랑스로 들어온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처리되기 전의 것이나 수출신고가 처리된 물품을 프랑스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72]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그곳에는 프랑스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재화를 수입하는 시점에서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autoliquidé)한다.[73]

EU 회원국 이외의 제3국(이 글에서는 '역외'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수입부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또는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는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거래와 같이 제3국에서 생산된 것 중 프랑스로 수입된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EU 회원국(이 글에서는 '역내'라고 한다)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

라. 기타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인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이론상 과세대상 거래는 아니나, 부가가치세의 조세 중립성

72) CGI, 제13조.
73) CGI, 제35조.

(neutralité économique) 확보 및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세무통제를 위하여, 조세일반법에서는 특정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간주(une disposition expresiée de la loi)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재화 및 용역의 자가공급

「조세일반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제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해당 납세의무자의 필요 때문에 자가 소비하거나, 기업의 사용인이 개별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재화나 용역의 자가공급(livraisons à soi-même de biens ou de service: LASM)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74]

이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 계산 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도, 납세의무자 본인이 사용·소비하는 경우, 사업자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왜냐하면 제3자에게 매출하지 않아서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임)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자가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있다.

한편, 기업의 경영이나 운용 목적으로 제3자에게 69유로(세금 포함)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75]

나) 비사업자로부터 구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로부터 소비세(droit de consommation)가 적용되는 알코올 등과 유통세(droit de circulation)가 적용되는 포도주 등을 구입한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74) CGI, 제257조.
75) CGI, ann. Ⅳ. 제23N조.

다) 부동산거래

「조세일반법」은 납세의무자(부동산매매업을 포함)가 사업목적으로 건축된 부동산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있다.[76] 우리나라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한다.[77]

2) 선택에 따라 과세거래 또는 면세거래로 인정하는 경우

프랑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행한 거래 중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사회적 목적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거래는 면세거래로 할 수 있다.

그 반대로, 법령에 따르면 면세거래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과세거래로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 후 5년 이상이 된 부동산의 양도, 나대지의 양도, 금융수수료 등 금융활동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하는 목적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함이기도 하고, 외형금액 중 90% 이상이 면세거래일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면세거래는 과세거래로 전환할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사례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Ⅲ-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사례

거래내역	과세대상	선택에 따른 면세	예외가 없는 면세
EU 회원국에 재화 공급			○
EU 회원국으로부터 재화 구입	○		

76) CGI, 제257조 제1항.
77)「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표 Ⅲ-1〉의 계속

거래내역	과세대상	선택에 따른 면세	예외가 없는 면세
나대지 임대		○	
이자 지급			○
은행 관리수수료 지급		○	
취득한 사업용 건물을 3년 이내 양도	○		
6년 전 취득한 재화의 양도	○		
자체 제작한 기계를 업무용으로 사용			○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포도주 구입	○		
건축용 토지 양도	○		

자료: 본문 내용 및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유상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해당 거래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하여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대가가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가로 과세한다.

가. 직접적 관련성

유상의 대가를 받고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와 대가의 지급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existence d'un lien direct)이 있어야 한다.[78] 이 경우, 대가란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나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금전 등을 의미하나, 재화 공급의 대가와 상대방의 용역의 공급으로 상계하거나 또는 법인의 현물출자에 대응하여 주식으로 교부받는 것도 포함한다.

78) CJCE, n°102/86, 1988. 3. 8.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용역의 공급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용역의 공급에 따라 받은 대가와 해당 용역의 가치가 분명하게 구별(clairement déterminé)되어야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나. 화폐 대용증권

화폐나 수표 또는 상품권(chèque-cadeaux)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거래관계가 아닌 단순한 지불관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100유로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이를 준 자와 받은 자 사이에는 거래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주기만 했지 받은 것은 없기 때문임).

3 재화와 용역의 구별 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화에 속하지 않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는 용역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재화와 용역의 구별 기준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재화와 용역에 다르게 적용하는 납세의무 성립이나 확정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판례에 따르면 전자책(livre électronique)은 2006년 11월 28일 「제6차 지침」(n°2006/112/CE) 제14조 제1항[79]에 따라 해당 재화(전자책)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80]

같은 논리로 CD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 소프트웨어(logiciel électronique)의 공급은 처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용역의 제공으로 간주한다.[81]

한편, 재화의 공급에 용역의 공급이 보조적(accessoire)으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82]

79) 'Supply of goods' shall mean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dispose of tangible property as owner.
80) CJCE, aff. C-479/13, 2015. 3. 5.
81) CE, n°307.746, 2016. 5. 7.
82) CJCE, aff. C-471/03, 2005. 3. 10.

무형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구별도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조세일반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유형재화의 처분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무형재화(meubles incorporels)의 처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Ⅳ. 과세표준

1. 일반원칙
2.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3. 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4. 자가공급의 경우

Ⅳ. 과세표준

1 일반원칙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반대급부의 금액이고,[83] 그 반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반대급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고, 화폐로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84]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조세, 관세, 유보금 기타 공과금, 수수료 비용·보험비용 등 급부 제공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다.[85]

반면, 선급금의 할인에 의한 에누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가격에 대하여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여받는 할인액과 상환액 등은 제외한다.[86]

가. 배상금 및 보상금

배상금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하고 그 지급원인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거래관계가 아닌 법률상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해당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87]

---

83) CGI, 제267조 제1항 제1호.
84)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제11조.
85)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제11조 제2항.
86)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제11조 제3항.
87) 같은 논리로 협회 등이 받은 회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상금(indemnités)이란 적법한 행위이지만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국가가 농업사업자의 농업활동을 중지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은 농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88]

한편 국사원은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89]

나. 보조금

보조금(subventions)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금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보조금도 해당 거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과세대상 거래를 저가로 판매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반대로, 국사원은 농업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없음에도 법규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90]

이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은 지급받은 보조금과 사업자의 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기준으로 ⅰ) 해당 보조금은 제3자(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고 ⅱ)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며 ⅲ) 해당 보조금으로 인해 고객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88) CJCE, n°C-215/94, Jurghen Mohr, 1996. 2. 29.
89) CE, n°359.526, 2013. 5. 17.
90) CE, n°88224, 1990. 7. 6.

다. 기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기업들 상호 간의 '자금 지원 성격(caractère financier)의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상업 지원 성격의 지원금(caractère commercial)'은 해당 지원금이 어느 특정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lien direct)이 있는지 또는 과세대상 거래가 있다면 그 거래 대가의 일부인지를 판단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해당 과세물건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와 차이를 이자의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본래의 대가에 부수해서 지급하는 비용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수수료, 운송비, 보험료, 우편료 및 통신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과세대상 거래에 포함하는 세금(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나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제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한다.

선급금(débours), 매출에누리액이나 할인액(remises)도 과세표준 금액에서 제외한다.[91]

한편, 환경부담금(contribution environnementale)은 매출이나 매입의 경우 모두 징수대상이 되는데, 이 금액은 영수증에 표기되며, 따라서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한다.[92]

영화관의 경우에 부과되는 좌석특별세(taxe spéciale sur le prix des places)는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하지만 국가에 납부하는 영화산업지원금은 과세표준 금액에서 제외한다.[93]

기부금(dons)을 받은 경우도 해당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보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한다.

---

91) BOFiP-TVA-BASE-10-10-30, 2014. 5. 20.
92) BOFiP-TVA-BASE_10-10-20, 2012. 9. 12.
93) BOFiP-TVA-SECT-20-50, 2014. 4 29.

2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가. 매출액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출액의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만일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94]

아울러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받은 비용, 수수료, 이자[95], 운송비 등도 매출액에 포함된다.[96]

통신판매의 경우에 발송비를 구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발송비도 매출액에 포함한다.[97] 운송비도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98]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이나 공과금이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출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99] 그러나 에누리, 가격인하, 반품 및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기타 요소, 중개사업자에게 환불되는 부분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100]

한편,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매출액으로 한다.

나. 매입액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액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의 과세표준 계산원칙과 동

94) 만일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이 100,000유로일 경우, 이를 재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00,000×(100/100+20)= 83,334】
95)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는 매출액에서 제외됨(1998. 5. 22. 지시공문).
96) CGI, 제267조 제1항 제2호.
97) BOFiP-TVA-BASE-10-10-10, 2012. 11. 15.
98) BOFiP-TVA-BASE-10-20-10, 2012. 9. 12.
99) BOFiP-TVA-BASE-10-10-20, 2012. 9. 12.
100) CGI, 제267조 제2항.

일하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액과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다. 역내 수입 및 역외 수입액

EU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매입액은 프랑스 내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만일 재화의 구입 시 유로 이외의 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에 유럽중앙은행(banque centrale européenne)에서 공표한 환율에 따라 환산한다.[101]

한편 프랑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EU 비회원국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화와 유사한 재화의 구입가격 또는 원가(prix de revient)를 과세표준으로 한다.[102]

한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구입사실이 정당한 영수증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3 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가. 매출액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출액은, 재화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일명 '팁', pourboire)는 사업주가 받든지 아니면 봉사원이 받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103]

101) CGI, 제266조 제1항 bis조.
102) CGI, 제266조 제1항 제c호.
103) BOFiP-TVA-BASE-10-20-40, 2015. 5 12.

발주업체가 하청업체에 주는 격려금(primes de volume, primes d'objectifs)은 해당 금원과 이를 받는 하청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계약서상 기본계약(contrat-cadre) 에서 격려금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청업체는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104]

한편, 여행 및 관광알선사의 경우 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해당 고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주택임대용역의 경우, 자가공급은 부동산의 재구입가격(여기에는 토지구입가격 또는 출자가격이 포함됨), 유상양도 또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 보상가격 또는 출자에 상응하는 가격이다.

판매업체가 제품의 A/S 기간 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A/S 비용은 판매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105]

나. 매입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매입액에 포함된다.

4 자가공급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자가공급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원가(coût de revient)로 한다. 부가가치세 비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 각종 제세공과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04) BOFiP-TVA-BASE-10-10-40, 2012. 9. 12.
105) BOFiP-TVA-BASE-10-20-10, 2012. 9. 12.

Ⅴ. 세율과 세액의 계산

1. 세율
2. 매출세액 계산
3. 매입세액 공제
4. 매입세액 불공제
5. 매입세액 안분공제
6. 의제매입세액 공제
7.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Ⅴ. 세율과 세액의 계산

1 세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표준세율(standard rate, taux normal), 중간세율, 감면세율 및 특별세율로 구성된다.

표준세율은 20%,[106] 중간세율은 10%[107], 감면세율은 5.5%[108] 그리고 특별세율은 2.10%[109]이다. 이를 요약하면 〈표 Ⅴ-1〉과 같다.

106) CGI, 제278조: Le taux normal d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est fixé à 20%. 종전에 적용하였던 19.6% 세율은 2012년 12월 29일 법률(n°2012-1510)에 따라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107) CGI, 제278bis조: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est perçue au taux réduit de 10% en ce qui concerne les opérations d'achat, d'importation, d'acquisition intracommunautaire, de vente, de livraison, de commission, de courtage ou de façon portant sur les produits suivants Produits d'origine agricole, de la pêche(이하 생략).

108) CGI, 제278-0bis조: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est perçue au taux réduit de 5,5% en ce qui concerne les opérations d'achat, d'importation, d'acquisition intracommunautaire, de vente, de livraison, de commission, de courtage ou de façon portant sur l'eau et les boissons non alcooliques ainsi que les produits destinés à l'alimentation humaine à l'exception des produits suivants auxquels s'applique le taux prévu à l'article 278(이하 생략).

109) CGI, 제281quarter조: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est perçue au taux de 2,10% en ce qui concerne les recettes réalisées aux entrées des premières représentations théâtrales d'oeuvres dramatiques, lyriques, musicales ou chorégraphiques nouvellement créées ou d'oeuvres classiques faisant l'objet d'une nouvelle mise en scène, ainsi que des spectacles de cirque comportant exclusivement des créations originales conçues et produites par l'entreprise et faisant appel aux services réguliers d'un groupe de musiciens(이하 생략).

표 Ⅴ-1 부가가치세 세율표

구분	내용
표준세율 20%	중간세율, 감면세율 및 특별세율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재화 및 용역 거래
	인적용역 서비스(정원관리, 시장봐주기, 학업봐주기, 정보수집 도와주기)
	알코올류 거래, 중고자동차 매매, 신차매매, 보석류 매매, 화학비료 매매
중간세율 10%	난방용 목재, 동물용 사료, 농업활동에 필요한 생산품
	원예품, 화초생산품
	사회보장보험(sécurité sociale)에서 환급받지 못하는 의약품
	TV서비스 예약금
	인적용역 서비스(단, 20% 및 5.5% 세율 적용분 제외)
	예술품, 수집품, 고가구 판매
	현장 판매, 배달판매
	방문, 동물원 등을 제외한 spectacles
	2년 이상된 주택의 수리용역(단 5.5% 적용분 제외)
	은퇴자 숙소에서 음식 제공
	학교 구내식당에서 음식 제공
	2014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지 10년 이상된 임대주택의 개량과 에너지시설 개체와 관련된 용역
	여객운송용역
감면세율 5.5%	기초생활 식료품(단, 주류, confiserie, 캐비아, 사업장에서 현장 판매분 제외)
	기초생활 농산품
	도서, 저작권 사용료
	도서 운송용역
	장애인을 위한 기구나 장비
	열공급, 전기공급
	장애인이나 고령자 돕기 용역
	스포츠 입장권, 디스코텍 입장권, 영화관 입장권, 라이브 쇼 입장권
	예술품의 수입이나 EU 회원국으로부터 구입
특별세율 2.1%	종이로 발간되는 신문(일간, 주간 등)
	사회보장보험에 의해 환급되는 의약품
	140여석 규모의 극장 및 서커스 공연
	TV 수신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에게 판매하는 살아있는 동물의 판매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매출세액 계산

매출세액은 매출 관련 과세표준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조세일반법」 제266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모든 대가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매출세액(TVA collectée)=
> 과세표준 금액×해당 적용세율(20%, 10%, 5.5%, 2.1%)

만일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구별하여 계산한다.

> 매출세액(TVA collectée)=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 (1+해당 적용세율)
> × 해당 적용세율(20%, 10%, 5.5%, 2.1%)

3 매입세액 공제

가. 일반원칙

「조세일반법」 제271조에 따르면 과세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ⅰ) 대응요건(conditions de fond) ⅱ) 형식요건(conditions de forme) 및 ⅲ) 시기요건(condition de temps)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하다.

1) 대응요건(conditions de fond)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납세의무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반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만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나머지는 사적 용도로 사용) 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90% 이상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예를 들면, 해당 재화가 납세의무자의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110]

한편, 1992년까지는 납세자의무자가 제공받은 재화가 본인 소유 재산이 아닐 경우, 해당 재화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이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에 위배되어서, 1993년부터는 공급받은 재화가 해당 납세의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종전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음과 관련한 세액 중 '회사의 관리자(dirigeants)나 종업원(salariés)'을 위해 지출한 거주(logement), 식사비(restaurant), 회의비(réception), 영화관람비(spectacle)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하였다.[111]

그러나 2000년 9월 19일 유럽사법재판소(CJCE)는 '사회공공의 이익(intérêt social)'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112]을 하였고, 2001년 이후에는 위에서 언급한 용역의 제공받는 것과 관련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113]

한편, 납세의무자가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의 무상제공에 따른 비용이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114]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115]

110) CGI Annexe Ⅱ, 제230-1조.
111) CGI Annexe Ⅱ, 제230-2조 내지 제242조.
112) CJCE, affaire C-276/97, 2000. 9. 19.
113) 이 점은 우리나라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정책과는 대비된다고 본다.

그러나 납세의무자 자산을 구성하는 운송수단(예: 승용차, 선박, 모터사이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운수회사의 경우 및 운전자석을 제외한 좌석이 8개 이상인 경우로서 개인을 직장까지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116]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수출의 경우나 역내의 다른 회원국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아울러 납세의무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재화나 용역을 자가공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2) 형식요건(conditions de forme)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는 매입세액 공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송장(invoice, facture), 수입재화의 경우 세관신고서, 역내 회원국으로 부터 구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 수취인의 계좌번호,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 구입의 경우 공증인 관련 서류 등이 있다.[117]

송장에는 구입금액(VAT 제외금액), 부가가치세 세율 및 합계금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118] 해당 송장은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시기요건(condition de temps)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114) 예를 들면, 비행기 출발, 취소로 인해서 비행기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115) CGI Annexe Ⅱ, 제236조.
116) 예를 들면, 직원 출퇴근용 버스 등이 해당한다.
117) CGI, 제257조 제7항.
118)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의 송장관련 규정 참조.

따라서 재화 공급의 경우 공급하는 자의 거래사실 성립일은 영수증 발행일이므로, 영수증 발행일이 속하는 날에 매입세액 공제를 한다.

또한, 용역 공급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대금지급일이므로, 대금지급일이 속하는 날에 매입세액 공제를 한다.

예를 들면, 2018년 4월 1일 컴퓨터를 구입하고 송장을 이날에 발행하였을 경우, 해당 재화의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2018년 4월 1일에 공제한다.

반대로 용역의 경우에는 지급일에 매입세액 공제를 한다. 만일, 2018년 1월에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해 2월에 지급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은 2월에 공제한다.[119]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금액을 누락하고 신고를 하였을 경우 누락한 해부터 2번째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120]

4 매입세액 불공제

「조세일반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중 사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예를 들면, 숙박비, 음식비, 접대비(réception) 및 극장요금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121]

그러나 접대비라고 하여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122]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119) 1993년 7월 1일 이전에는 지급한 달보다 1달 늦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예를 들면 1991년 2월에 용역대가를 지급했다면, 이 매입세액은 같은 해 3월에 공제받았다.

120) 우리나라는 공급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이 같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점은 프랑스 매입세액 공제와 비교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매우 엄격한 규정이라고 본다.

121) CGI Annexe Ⅱ, 제238조.

표 Ⅴ-2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예외(매입세액 공제 대상)
기업의 관리자(dirigeant)나 사용인을 이익을 위한 주택이나 숙소의 비용	건설현장 노동자, 공사건설 감독이나 안전원 또는 경비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여객운송 또는 다목적 차량 및 이와 관련된 부품	관광객 운송용 차량, 작업장으로 작업인부를 운송하는 9좌석 이상의 차량, 운전학원의 자동차, 유틸리티용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가 불공제되는 재화에 부수하는 용역	-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69유로(세금 포함) 이하의 선물, 107유로(세금 포함) 이하의 광고선전용 디스플레이어, 판매금지가 쓰여진 견본품 및 표본품, 광고선전품
휘발유 연료, 디젤연료, 최종소비자가 사용하는 오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차량에 대한 디젤연료와 휘발유 연료, 부탄가스, GPL, GNV, 관광용 차량의 연료(단, 80%까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차량의 휘발유 및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차량의 연료(단, 20%까지만)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한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재화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경비로 처리한다.

〈계산 사례〉

중개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A는 8월 중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이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2)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 「조세일반법」에서는 접대비 한도초과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프랑스 관습상 남을 대접하는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설사 지출한다고 하여도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① 거래 내역

일자	내역
5일	7월에 대표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수리비용으로 300유로(TVA 제외, 정상세율)을 지급하였다.
8일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였고 8,000유로를 지급하였다(TVA 제외, 정상세율).
10일	사무실 청소비용 2,000유로가 적힌 청구서를 받았다. 대금은 9월 30일 지급할 예정이다.
18일	회사 대표자의 호텔비 1,000유로를 지급하였다(TVA 제외, 10% 세율).
23일	고객 300명에게 무료로 지급할 선물용 펜 300자루를 1,000유로에 구입하였다(TVA 제외, 정상세율).
30일	공급자 접대비(note de restaurant) 500유로를 결제하였다(TVA 제외, 10% 세율).

②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일자	매입세액 공제여부	매입세액
5일	공제 불가능(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재화에 대한 용역의 제공)	-
8일	공제 가능(재화의 공급)	1,600(8,000×20%)
10일	공제 가능(그러나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9월 30일에 공제함)	-
18일	공제 불가능(회사 대표자의 사적인 호텔비)	-
23일	공제 가능(1인당 선물가액이 69유로 이하임)	200(1,000×20%)
30일	공제 가능(고객에 대한 식사비)	100(500×20%)
8월 중 매입세액		1,900

5 매입세액 안분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안분규정은 2007년 4월 16일 시행령(décret)에서 규정하고 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중 법령이 정하는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의 매입세액은 ⅰ) 과세사업에 이용하는 비율(coefficient d'assujettissement) ⅱ) 매출액 중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coefficient de taxation) 및 ⅲ)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율(coefficient d'admission)로 구별한다.

그리고 이들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비율(이하 '안분비율'이라 함)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23]

위 안분비율 계산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1, 불가능한 것은 0으로 하여 계산하고 있다. 이를 공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과세사업에 이용하는 비율 (coefficient d'assujettissement)	×	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coefficient de taxation)	×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율 (coefficient d'admission)

가. 과세사업에 이용하는 비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위해 ⅰ)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ⅱ)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ⅲ)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구별하여 해당 비율(과세사업에 이용하는 비율)을 산정한다.

만일, 해당 재화나 용역이 전적으로 과세사업에 사용된다면 해당 비율은 1(égal à l'unité)로 하고, 그 반대로 면세사업에 모두 사용된다면 0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123) CGI Annexe Ⅱ, art. 205.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안분공제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안분공제 비율 산정기준의 정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예를 들면, 과세대상 사업과 면세대상 사업을 겸하고 있는 납세의무자 A가 복사기를 5,000유로에 구입하였는데(TVA 제외, 정상세율), A는 그의 업무시간 중 20%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경우, A가 구입한 복사기를 해당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00-면세사업비율 20)/100=0.80

나. 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이는 총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총매출액은 부동산 양도금액, 보조금 중 부가가치세 비과세금액, 부동산의 자가공급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액, 보험금, 금융수입 및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부동산 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또한, 비율계산은 1년 단위로 하며, 만일 해당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여러 분야에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액기준이 아닌, 각 분야별 재화나 용역의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비율

「조세일반법」에서는 매입세액 중 일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나 용역 중 매입세액이 본질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예: 출퇴근용 승용차 등).

이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행한 사업활동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에 따라 조세정책 목적으로 불공제되는 항목이다.

만일,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모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경우에는 안분공제비율을 0으로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1로 하며, 1 이하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출퇴근용 승용차는 0으로 하되, 유지비의 비율은 0.8로 정해져 있다.

만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A가 N 사업연도 중 출퇴근용 승용차를 10만유로에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연료비 등으로 5,000유로를 지출했다면, 일단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20,000유로(100,000유로×20%)는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하되, 유지비 1,000유로(5,000유로×20%) 중 법령으로 정하는 안분비율 0.10을 곱하면 일단 공제가능액은 100유로(1,000유로×0.10)가 된다.

만일 납세의무자 A의 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0.61이라면, 매입세액 공제액은 49유로(100유로×0.61×0.80)가 된다.

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비율 조정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비율은 잠정적인 것으로(왜냐면 N 사업연도의 매출액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다음연도 4월 25일에 확정적인 안분비율을 결정하고 이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만일 N 사업연도의 안분비율이 N+1 사업연도에 확정적으로 결정된 비율보다 높다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고(왜냐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았으므로), 그 반대인 경우에는 N+1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한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B는 컴퓨터를 50,000유로(TVA 제외, 정상세율)에 구입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데, B가 N 사업연도에 잠정적으로 〈과세사업에 이용한 비율 1, 매출액에서 과세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0.36 및 법령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율을 1〉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B는 3,600유로(50,000유로×부가가치세 세율 20%×과세사업에 이용한 비율 1×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0.36×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1)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B가 N+1 사업연도 4월 20일, 위 비율을 〈과세사업에 이용한 비율 1, 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0.48 및 법령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율 1〉로 확정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B가 확정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금액은 4,800유로(50,000유로×부가가치세 세율 20%×과세사업에 이용한 비율 1×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0.48×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1)가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B는 N+1 사업연도에 1,200유로 〈(N+1 사업연도 결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능액)-(N 사업연도에 실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금액)〉를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마. 자산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조세일반법」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상품이 아닌 자산을 매입한 경우, 자산에 부과된 매입세액을 구입한 해에 모두 공제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공제할 것인가에 대해, 일단 매년 정산을 한 뒤, 해당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매년 정산(régularisation annuelle)을 하는 경우

자산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연도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하되, 다음연도에서 비율을 확정적으로 결정하여 수정한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한 N 사업연도의 안분비율(과세사업에 이용한 비율×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법령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

율)과 정산을 하는 기준연도인 N+1 사업연도의 안분비율(과세사업에 이용한 비율×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법령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율)의 차이가 1/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매년 정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수정과정을 생략한다.

매년 정산을 하는 동안, 첫해의 매입세액 공제분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1/20 또는 1/5을 기준(자산에 따라 감가상각 연도를 참조하여)으로 하여 수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산은 취득한 연도의 다음연도 4월 25까지 한다. 이를 공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최초연도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 연도 안분비율 - 기준연도 매입세액 공제 안분비율)〉×1/20 또는 1/5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D는 기계장치(자산)를 N 사업연도에 10만 유로에 구입하였다(부가가치세액 20,000유로 별도). 이때 적용한 자산취득 매입세액 공제비율(과세사업에 이용한 비율×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법령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율)은 0.36이었다. 그런데 이후 N+1 사업연도에 이를 0.48로 확정하였다면 N 사업연도와 차이가 0.12가 되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1/10을 초과하므로 매년 수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N+2 사업연도 4월 20일까지는 N+1 사업연도의 매입세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2) 종합 정산(régularisation global)을 하는 경우

만일 위 매년 정산 대상의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다. 「조세일반법」에서는 취득연도의 자산취득 매입세액 공제비율이 1/3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정산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합정산의 방식은 아래와 같다.

〈(최초연도 매입세액)×
(양도연도 비율 - 기준연도 비율)〉×잔존연도/20 또는 잔존연도/5

이때, 양도연도의 비율은 법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의 양도시 과세비율: 0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양도시 과세비율: 0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의 양도시 공제비율: 1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C는 N 사업연도에 사업용 자산을 100만유로(TVA 제외, 정상세율)에 구입하였고, 그가 N 사업연도에 적용한 잠정적인 비율은 〈과세사업에 이용한 비율 0.7, 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0.4 및 법령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율을 1〉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며, 그 후 N+12 사업연도에,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자.

납세의무자 C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56,000유로를 공제받았다.

- N 사업연도에 잠정 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100만유로×부가가치세 세율 20%×과세사업에 이용한 비율 0.7×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0.4×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1=56,000유로

그런데 위 자산은 취득 후 5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 자산의 내용연수를 20년이라고 할 경우, N+13 사업연도부터 N+19 사업연도 사이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을 정산하여야 한다. 위 공식에 따라 종합정산을 하면 아래와 같다.

(양도한 연도의 과세비율 0-기준연도의 비율 0.36)×해당 부가가치세액 56,000유로 ×(남은연도 7년/내용연수 20년)=19,600유로

따라서 위 금액은 환급받을 금액이 된다.

바. 기타 재화 및 용역의 경우

자산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 중 해당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 및 비과세되는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조정한다.

이때, 멸실되는 경우 중 폐품(rebut), 사고로 인한 훼손 및 절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비과세되는 경우란 기업주나 그의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다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어 해당 금액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 자동정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법령이 정한 경우, 해당 물품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계상을 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도 공제한다.

자동정산이 적용되는 경우는 EU 역내 회원국으로부터 재화의 취득, 제3국으로부터 재화의 수입, 하도급 계약에 따른 건축공사, 외국의 사업자에 의한 프랑스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프랑스 사업자에게 국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용역의 경우, 재활용폐자원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등이 있다.

〈계산사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의 8월 중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시오.

① 판매거래

구분	내역	금액(TVA 제외, 정상세율)
ⓐ	프랑스에서 재화 공급	500,000
ⓑ	한국에 재화 수출	30,000
ⓒ	EU 회원국인 스웨덴에 재화 공급	50,000
ⓓ	프랑스에서 용역 공급	200,000

② 구입거래

구분	내역	금액(TVA 제외, 정상세율)
ⓐ	프랑스에서 재화 구입	100,000
ⓑ	EU 회원국인 덴마크에서 재화 수입	60,000
ⓒ	EU 회원국인 스웨덴에서 재화 수입	30,000
ⓓ	EU 회원국인 네덜란드에서 복사기 수리	1,000
ⓔ	프랑스에서 오토바이 구입	5,000
ⓕ	화물용 차량 임차(8월에 임차료 지급)	2,000
ⓖ	위 임차 차량용 디젤연료 구입	3,000
ⓗ	사람운송용 차량 수리(대금지급은 9월)	4,000
ⓘ	사무용 가구 구입	6,000
ⓙ	정원 관리수리(débits 선택, 대금지급은 9월)	7,000
ⓚ	고객의 식사비	800
ⓛ	관광용 승용차 유류비	700

③ 자산양도거래

구분	내역	금액(TVA 제외, 정상세율)
ⓐ	컴퓨터 판매	2,000
ⓑ	관광용 승용차 매각(N-2년도에 20,000유로 구입)	30,000

④ 입금내역

구분	내역	금액(TVA 포함, 정상세율)
ⓐ	재화 공급 대금 입금(영수증 발행 7월)	600,000
ⓑ	용역 제공 대금 입금(영수증 발행 8월)	700,000
ⓒ	용역 제공 대금 입금(영수증 발행 7월)	400,000
ⓓ	9월에 제공할 용역 제공 계약금(acomptes) 입금	300,000
ⓔ	8월에 양도한 자산 대금 입금(영수증 발행 7월)	200,000

⑤ 출금내역

구분	내역	금액(TVA 제외, 정상세율)
ⓐ	재화 구입 대금 송금(영수증 발행 7월)	500,000
ⓑ	재화 구입 대금 송금(영수증 발행 8월)	400,000
ⓒ	7월에 수행한 용역비 송금	100,000
ⓓ	8월에 임차한 차량비 송금	50,000
ⓔ	정원 수리비 송금(영수증 발행 7월, débits 표시)	200,000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의 8월 중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시오.

구분	부가가치세 비과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① 판매거래(매출세액: 100,000)			
ⓐ		(500,000×20%)	
ⓑ	비과세: 수출		
ⓒ	비과세: EU 역내 회원국 수출		
ⓓ		대금 입금일에 계상	
② 구입거래(매출세액: 18,200, 매입세액: 41,908)			
ⓐ			(100,000×20%)
ⓑ	autoliquidation	(60,000×20%)	(60,000×20%)
ⓒ	autoliquidation	(30,000×20%)	(30,000×20%)
ⓓ	autoliquidation	(1,000×20%)	(1,000×20%)
ⓔ	비과세: 사람운송 차량		공제비율: 0%
ⓕ			2,000×20% (대금지급월)
ⓖ			3,000×20%
ⓗ	비과세 대상 차량 수리비		
ⓘ			6,000×20%
ⓙ			7,000×20%
ⓚ			800×10%
ⓛ			공제비율: 0.2 (700×20%)×0.2
③ 자산양도거래(매출세액: 6,400, 매입세액: 1,600)			
ⓐ		(2,000×20%)	
ⓑ		(30,000×20%) (선택)	(20,000×20%)×(1-0)× 2/5(추가공제)
④ 입금내역(매출세액: 233,332, 매입세액: 0)			
ⓐ		7월에 계상하였음 (영수증 발행일)	
ⓑ		(700,000/1.2)×20%	

구분	부가가치세 비과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		(400,000/1.2)×20%	
ⓓ		(300,000/1.2)×20%	
ⓔ		7월에 계상하였음 (영수증 발행일)	
⑤ 출금내역(매출세액: 0, 매입세액: 110,000)			
ⓐ			영수증 7월에 발행
ⓑ			400,000×20%
ⓒ			100,000×20%
ⓓ			50,000×20%
ⓔ			영수증 7월에 발행 (débits 표시)
합계		357,932	153,508

한편, ② 구입거래 중 ⓓ 거래는 EU 회원국 간의 B2B 거래로서, 과세권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과세권은 프랑스에 있다. 이 경우 과세대상 시기는 입금 시점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 시점이다.

6 의제매입세액 공제

프랑스의 「조세일반법」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124]

124) 그 이유는 거래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면세거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누적효과를 없애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고 본다.

7 납부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액이 760유로 이하이었을 때는 해당 월의 말일에, 초과일 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에 환급한다.

가. 납부할 세액 산출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한다. 그 흐름은 〈표 V-3〉과 같다.

표 V-3 납세할 세액 계산 구조

구분	내역
매출세액	
(+)	M월이 기간 동안, 매출액에 부가하여 징수(collectée)한 세액
(+)	M월 기간 동안, EU 회원국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due)한 부가가치세액
(+)	M월 기간 동안 다른 유형의 거래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	
(-)	M월 기간 동안,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받음에 따라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	M월 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에 따라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납부할 세액	(매출세액의 합계) - (매입세액의 합계)

자료: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환급세액 결정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해당 금액은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다. 한편, 이러한 환급이 부동산의 취득, EU 역내

국가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 및 수입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다음달 신고에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이 76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매달 신고 시 환급요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15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요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환급요청을 전산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해당 금액은 과세관청(DGFiP)의 다른 세목에 충당할 수도 있다.

Ⅵ. 영세율과 면세제도

1. 영세율
2. 면세

Ⅵ. 영세율과 면세제도

1 영세율

프랑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세율, 즉 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은 없다. 수출 거래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 적용을 한다. 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역내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프랑스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exonération)되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125] 그리고 수출하는 재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도 수출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출자는 「조세일반법」 제28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발송명세서, 상표 및 꾸러미별 수량, 면적, 가격 및 행선지 등을 날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출자는 각 수출신고 건별로, 과세관청에 의해 구비된 서식에 따라, 발송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면세

부가가치세 체계상 면세거래는 세법상 열거[126]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면세거래는 사회적인 정책의 목적(motifs sociaux), 이중과세의 방지 및 기술적인 이유 등이 있다.[127]

125) CGI, 제262조 제1항 제1호: Sont exonérées d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1°les livraisons de biens expédiés ou transportés par le vendeur ou pour son compte, en dehors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ainsi que les prestations de services directement liées à l'exportation. 우리나라 영세율 제도와 비교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급제도를 통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실현하고, 프랑스는 직접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6) CGI, 제261조 내지 제263조.

127)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조세일반법」 제261조에서는 여러 가지 면세대상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128]

가.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단체

비영리 목적을 띤 사업자 단체에 의해 그들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사회, 교육, 문화 또는 스포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여기에는 비영리 목적 단체의 총수입금액의 10% 이내에서 판매의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민간기업과 경쟁관계가 없는 경우의 비영리 성격의 사회주의 또는 박애주의 성격의 거래 및 비영리 목적 운영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나. 공공 목적의 의료용역

공중 목적의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즉, 「공중건강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 712-8호에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설병원의 병원비 및 치료비[129], 의료협회에서 치료비가 면제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치료, 사회기구단체 및 의료사회와 관련된 노인에 대한 사설병원의 치료 중 「사회보장법」 제L 174-7호의 규정에 따른 치료비가 면제된 치료행위 등이 있다.

다. 교육용역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와 전문학원이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육용역,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인증에 따른 사립기관에 의한 직업교육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128) CGI, 제261조: Sont exonérés de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4° les opérations à terme sur marchandises réalisées sur un marché réglementé à l'exclusion de celles qui déterminent l'arrêt de la filière(이하 생략).

129) 이 규정은 1996년 4월 12일 관련 법 n°96-314가 발효되는 날 이후부터 적용된다(JO 제13항).

라. 농수산물의 경우

「농촌법(Code rural)」 제L325-1에서 L325-3에 규정된 농업사업자의 상부상조 용역과 어부가 획득한 수산물(생선, 갑각류, 날 조개류 또는 냉동고에 보관된 조개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130]

마. 기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면세 대상 이외에 납세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면세거래는 〈표 Ⅵ-1〉과 같다.

표 Ⅵ-1 면세거래 대상 요약

구분	내용	법 조문
임대용역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임대수입	CGI, 제261D조
	토지나 가구가 없는 숙소(locaux nus)의 임대수입	
	일시적 · 고정적 · 계절적으로 가구가 있는 숙소(logements meublés) 또는 가정용 가구(garnis)의 임대수입	
사행성 게임 용역	관광세 또는 누진세로 원천징수되는 게임 수입	CGI, 제261E조
	국가가 운영하는 로또 수입, 경마, 경륜 수입	
의료 및 약국의 활동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의료팀(membres des professions médicales)에 의한 환자 치료용역	CGI, 제261조 제4항
	골수이식, 척추교정, 정신과 치료, 치료목적의 바이오 분석 연구, 치과 임플란트	
	건강의료원에서의 병원치료 수입, 노인을 위한 방문치료 수입, 인체 장기 이식 수입, 환자 수송용 차량의 운용 수입	
교육용역	대학 및 학교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용역	CGI, 제261조 제4항 제4호
	직업 교육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	

130) 단, 민물에서 종사하는 어부가 획득한 수산물거래는 제외된다.

〈표 Ⅵ-1〉의 계속

구분	내용	법 조문
은행 및 금융 용역	신용 상담용역 수입	CGI, 제261C조
	보증금 수입	
	송금, 입금, 수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보험 및 재보험 수입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용역		CGI, 제261조 제7항
수출 및 국제운송용역		CGI, 제262조

자료: 「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가 작성함.

Ⅶ. 과세거래의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1. 공급장소
2. 공급시기

Ⅶ. 과세거래의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1 공급장소

부가가치세 과세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장소가 소재하는 회원국이 가지고 있다. 「조세일반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공급장소는 아래와 같다.

가. 재화의 공급장소

재화의 공급장소는 해당 재화가 발송한 장소(expédition)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발송한 장소가 공급장소가 된다. 한편, 재화가 공급자 · 취득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발송 또는 운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취득자에게로 발송 또는 운송의 시작 시점에 있는 장소가 재화의 공급장소가 된다.[131]

단, 해당 재화가 공급자에 의해 또는 그의 계산으로, 시험가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되거나 조립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나 조립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재화의 공급장소로 된다.[132]

재화가 발송 또는 운송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가 공급되는 시점에 있는 장소를 재화의 공급장소로 한다.[133]

131)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제8조 제1항 및 제2항.
132)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제8조 제1항 제a호.
133)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제8조 제1항 제b호.

나. 용역의 공급장소

용역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prestataire)가 프랑스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프랑스 내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134]

1)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preneur)가 프랑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공급장소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프랑스 밖의 역내 국가에서 설치된 고정사업장에서 프랑스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le siège de son activité économique)를 공급장소로 본다.

둘째,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프랑스 내의 고정사업장(établissement stable)을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공급장소로 본다.

마지막으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주소지나 주된 거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본다.

134) 이는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개정의 결과를 프랑스 조세절차법이 수용한 것임. CGI, 제259조 제1항 및 제2항: Le lieu des prestations de services est situé en France: Lorsque le preneur est un assujetti agissant en tant que tel et qu'il a en France: a) Le siège de son activité économique, sauf lorsqu'il dispose d'un établissement stable non situé en France auquel les services sont fournis ; b) Ou un établissement stable auquel les services sont fournis ; c) Ou, à défaut du a ou du b, son domicile ou sa résidence habituelle ; Lorsque le preneur est une personne non assujettie, si le prestataire: a) A établi en France le siège de son activité économique, sauf lorsqu'il dispose d'un établissement stable non situé en France à partir duquel les services sont fournis ; b) Ou dispose d'un établissement stable en France à partir duquel les services sont fournis ; c) Ou, à défaut du a ou du b, a en France son domicile ou sa résidence habituelle.

표 Ⅶ-1 용역의 제공장소(B2B) 거래

B2B 거래			
용역제공자	용역을 제공받는 자 (사업자)	과세국가	납세의무 (redevable)
프랑스	프랑스 이외의 국가	프랑스에서 비과세	용역을 제공받는 국가에서 거래징수 (autoliquidation)
프랑스 이외의 국가	프랑스	프랑스에서 과세	프랑스에서 거래징수 (autoliquidation)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에서 과세	용역제공자

사례: 프랑스 밖에 소재하는 구글이 프랑스 납세의무자 F에게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자. 이 경우 공급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만일 프랑스 밖의 아일랜드 고정사업장에서 프랑스 납세의무자 F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F의 고정사업장 주소지가 공급장소가 되며, 프랑스에서 과세한다.

② 구글의 프랑스 고정사업장에서 독일의 납세의무자 G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G의 고정사업장 주소지가 공급장소가 되며, 프랑스에서 비과세한다.

③ 위 ① 및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납세의무자 F의 고정사업장 주소지가 공급장소가 되며, 프랑스에서 과세한다.

2)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preneur)가 프랑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즉 최종소비자인 개인인 경우 공급장소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프랑스 밖의 국가에서 설치된 고정사업장을 통해서 프랑스의 개인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면 그의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le siège de son activité économique), 즉,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공급장소로 한다. 즉, 프랑스에서 비과세한다.

둘째,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프랑스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을 통해서 프랑스 이외의 역내 회원국의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공급장소로 한다. 즉, 프랑스에서 과세한다.

셋째,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프랑스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프랑스의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공급장소로 한다.

표 Ⅶ-2 용역의 제공장소(B2C) 거래

B2C 거래			
용역제공자	용역을 제공받는 자 (비사업자)	과세국가	납세의무 (redevable)
프랑스	프랑스 이외의 국가	프랑스에서 과세	용역 제공자
프랑스 이외의 국가	프랑스	프랑스에서 비과세	용역 제공자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에서 과세	용역 제공자

사례: 프랑스 밖에 소재하는 구글이 프랑스 최종소비자인 개인 A씨에게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자. 이 경우 공급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만일 프랑스 밖의 아일랜드 고정사업장에서 프랑스 개인 A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아일랜드에 있는 구글의 고정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비과세한다.

② 만일 프랑스내에 있는 구글이 고정사업장이 독일에 있는 G씨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G의 주소 또는 거소지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비과세한다.

③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프랑스 내 고정사업장에서 프랑스 개인 F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 예외규정

「조세일반법」에 따르면 용역의 성격에 따라 일반원칙과는 별도의 제공장소 규정을 두고 있다.[135]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Ⅶ-3 용역 제공의 경우 과세장소 예외규정

용역의 성격	과세원칙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용역(건설, 유지 등) 제공	해당 부동산이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과세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에게 숙박용역 제공 및 현장 판매	프랑스에서 과세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에게 여객운송 용역 제공	프랑스에게 과세(단, 프랑스 내에서 운송한 거리에 비례하여)
비사업자에게 장기간 운송수단 (예: 자동차)임대 용역 제공	프랑스에서 과세(프랑스에서 비사업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
비사업자에게 동산과 관련된 작업 용역 제공	프랑스에서 과세(프랑스에서 해당 용역 제공 설비가 있는 경우)
비사업자에게 EU 역내에서 재화의 운송과 관련된 작업 용역 제공	프랑스에서 과세(해당 운송용역의 출발지가 프랑스인 경우)

135) CGI, 제256A조.

〈표 Ⅶ-3〉의 계속

용역의 성격	과세원칙
비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의 제공	프랑스에서 과세 (만일 용역제공자가 프랑스 내에 소재하고 있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EU 역내 국가의 경우, 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 부담)
	프랑스에서 과세 (비사업자가 프랑스 또는 EU 역내 국가에 거주하고, 용역 제공자가 EU 역외 국가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해당 용역이 프랑스 내에서 이용되는 경우)

2 공급시기

프랑스 부가가치세제상 납세의무 성립일과 납세의무 확정일이 대부분 유사하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앞의 〈표 Ⅴ-2〉 과세거래별 거래사실 성립일과 거래대금지급 성립일 중 납세의무 확정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Ⅷ. 부가가치세 행정

1.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세지
2. 세금계산서 제도
3. 일반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4.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
5. 기장의무와 증빙작성의무
6. 사업자등록
7. 그룹 법인의 신고 및 납부

Ⅷ. 부가가치세 행정

1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세지

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소득세와 법인세와 같이 1년 단위로 한다. 그 기간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사업연도와 일치된다.

나.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1) 납세의무 성립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에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136] 납세의무가 성립(le fait générateur)하면 과세관청은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된다.[137]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거래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시점을 결정하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기간(매월 단위, 분기 단위, 매년 단위)를 결정한다.

136) CGI, 제269조 제1항: Le fait générateur de la taxe se produit: a) Au moment où la livraison, l'acquisition intracommunautaire du bien ou la prestation de services est effectué(이하 생략). 참조 조문: 2006년 EU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 제62조.

137) Béatrice et Francis Grandguillot, *La Fiscalité Française 2018*(제23판), Gualino, 2018, p. 46: Il est le fait par lequel sont réalisées les conditions légales nécessaires pour l'exigibilité de la taxe.

2) 납세의무 확정

납세의무 확정(exigibilité)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징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만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징수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에 가능하다.

「조세일반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에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있다.[138]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 성립일과 확정일이 동일하지만, 일부 거래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과 확정일이 다르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표와 같다.

표 Ⅷ-1 과세거래별 거래사실 성립일과 거래대금지급 성립일 비교

구분	납세의무 성립일	납세의무 확정일	내용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일	재화의 공급일(원칙적으로 영수증의 일자)	재화의 공급자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성립일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 (indépendant)
용역의 공급	용역제공의 완료일	대가 수령일	과세표준 금액은 용역대가(VAT 제외) 금액과 동일함. 만일 대가를 분할(fractionné)하여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각 대가를 지급한 날(수표의 경우 교부일, 은행송금의 경우 공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날, 상업어음의 경우 지급일)
재화의 자가공급	재화의 첫 이용일, 용역의 제공 첫 실행일, 부동산의 완성일	왼쪽과 같음	부가가치세는 해당 납세자가 공급자가 되어 징수함. 그러나 2014년 12월 20일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편화작업의 일환으로

138) CGI, 제269조 제2항: a) Pour les livraisons et les achats visés au a du 1 et pour les opérations mentionnées aux b et d du même 1, lors de la réalisation du fait générateur 9 (이하 생략).

〈표 Ⅷ-1〉의 계속

구분	납세의무 성립일	납세의무 확정일	내용
			부동산의 자가공급은 해당 부동산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었다면(réducteur intégral),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U 회원국으로부터 취득	재화의 공급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다음달 15일 또는 다음달 15일 이전에 계산서가 발행될 경우에는 그 날	취득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고, 동시에 해당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이를「자동정산방식 autoliquidation」이라 함. 그러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실재 재화의 공급이 있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제3국으로부터 수입	관세선 통과시점 dédouanement	관세선 통과시점 dédouanement	수입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함.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수입자)는 이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자료:「조세일반법」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대가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우리나라의 대손세액공제와 유사).

3) 건축공사의 하도급계약의 경우

건축공사 분야의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를 위해, 하도급공사계약(수리, 청소, 유지, 변형공사 포함)의 경우에는 자동정산방식(autoliquidation)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간축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같은 금액을 징수하고 또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하도급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에 TVA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그리고 해당 계산서에 '자동정산방식(autoliquidation)'이라고 표시한다.

4) 수입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자동정산방식(autoliquidation)제도를 법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승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적용방식을 신청하기 전 12개월 동안, i) 적어도 4회 이상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있을 것 ii) 관세법 및 세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없을 것 iii)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요건에 대한 심사는 관세청에서 한다.

다. 납세지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담당하는 세무서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선택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제도

프랑스에서는 세금계산서라는 용어는 없으며 그 대신 송장(invoice, facture)은 우리나라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거래 내용 정보를 담고 있다면)을 충족한다면 이를 송장으로 인정한다.[139]

139) CGI, 제218조. 전자 송장이란 이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전자형식으로 발급 및 수령된 송장을 의미한다(CGI, 제217조). 또한, 초기 송장을 수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한 문서나 메시지도 이를 송장으로 간주한다(CGI, 제219조).

가. 일반적인 규정

모든 납세의무자는 다른 사업자 또는 법인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수증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선급금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납세의무자는 교부된 모든 서류의 2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송장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한 곳(과세장소)이 속하는 회원국에서 적용하는 규칙에 따라 발급한다.[140] 일반적으로 송장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되어야 한다.[141]

한편, 회원국은 송장 금액이 100유로 이하면 '간이 송장'의 발급을 허용하여야 한다.[142] 간이 송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발급 날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종류 식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이나 이는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143]

아울러 회원국은 송장에 대한 서명을 의무화하지는 않으며,[144] 송장에 표기된 금액은 어떤 통화로도 표기할 수는 있으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제91조에 따라 환율 구조를 통해 환산한 후 자국 통화로 표시한다.

송장은 '출처의 진정성(authenticity of the origin, l′authenticité de leur origine)'과 '내용의 온전성(integrity of the content, l′intégrité de leur contenu' 및 '가독성(legibility, lisibilité)'이, 종이 송장이든 전자 송장이든 발급 시점부터 송달 보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장되어야 한다.[145]

---

140) CGI, 제219a조 제1항.
141) CGI, 제222조.
142) CGI, 제220a조 제1항.
143) CGI, 제226조.
144) CGI, 제229조.
145) CGI, 제233조 제1항 전단부. 한편 회원국은 종이 송장이든 전자 송장이든 발송되거나 제공된 원본의 저장을 의무화할 수 있으며, 전자방식으로 저장하는 경우 송장의 출처의 진정성과 내용의 온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전자방식으로 저장을 의무화할 수 있다(CGI, 제247조 제2항).

출처의 진정성이란 송장 발급이나 공급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내용의 온전성이란 이 지침에 따라 요구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146]

나. 영수증에 포함될 내용

「조세일반법」에서는 송장에 포함될 내용은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거래 내용 정보를 담고 있다면)을 충족한다면 이를 송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7]영수증에 포함될 내용은 아래 표의 사항이 담겨 있어야 한다.

표 Ⅷ-2 송장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내용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발급일	제226조 제1호
송장 일련번호	제226조 제2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제226조 제3호
고객이 자기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 해당 고객의 식별번호	제226조 제4호
납세의무자 및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제226조 제5호
공급된 재화의 수량과 특징, 제공된 용역의 범위와 특징	제226조 제6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짜	제226조 제7호
단가, 할인이나 리베이트	제226조 제8호
세율	제226조 제9호

146) CGI, 제33조 제1항 후단부.
147) CGI, 제218조. 전자 송장이란 이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전자형식으로 발급 및 수령된 송장을 의미한다(CGI, 제217조). 또한, 초기 송장을 수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한 문서나 메시지도 이를 송장으로 간주한다(CGI, 제219조).

〈표 Ⅷ-2〉의 계속

내용	2006년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제226조 제10호
고객이 공급자 대신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기	제226조 제10a호
면세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면세임을 명기	제226조 제11호
고객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면 매입자 납부임을 명기	제226조 제11a호
새로운 운송수단의 공급이면 해당 운송수단의 특징 명기	제226조 제12호
마진이 적용되는 여행사의 경우에는 〈마진제도- 여행사: margin scheme travel agents〉임을 명기	제226조 제13호
마진이 적용되는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등의 경우에는 〈마진제도- 예술품: margin scheme work of arts〉임을 명기	제226조 제14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세무대리인이면 해당 세무대리인의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명기	제226조 제15호

자료: 「제6차 지침」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함.

참고로 프랑스 내 거래의 송장 사본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Ⅷ-1 프랑스 내 송장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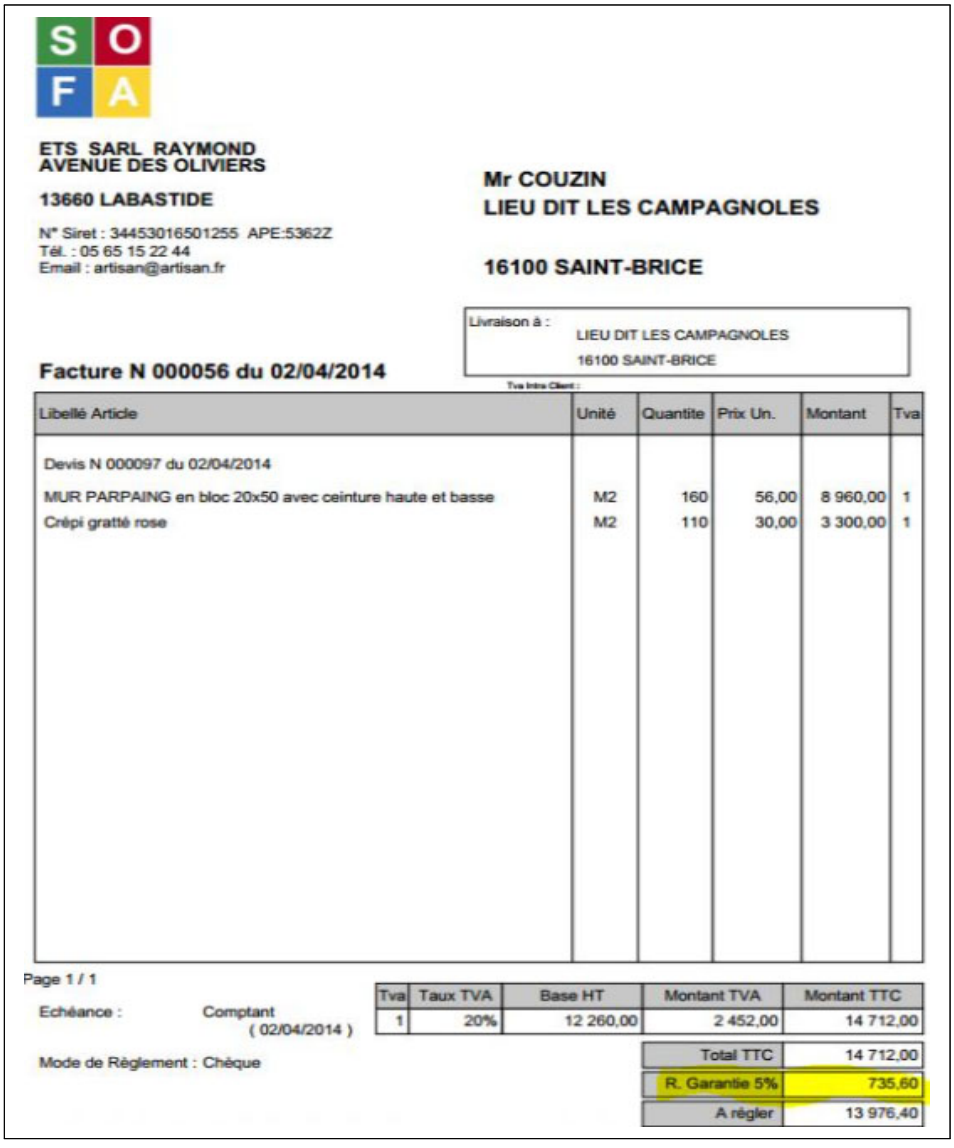

ETS SARL RAYMOND
AVENUE DES OLIVIERS

13660 LABASTIDE

N° Siret : 34453016501255 APE:5362Z
Tél. : 05 65 15 22 44
Email : artisan@artisan.fr

Mr COUZIN
LIEU DIT LES CAMPAGNOLES

16100 SAINT-BRICE

Livraison à :
LIEU DIT LES CAMPAGNOLES
16100 SAINT-BRICE

Facture N 000056 du 02/04/2014

Tva Intra Client :

Libellé Article	Unité	Quantite	Prix Un.	Montant	Tva
Devis N 000097 du 02/04/2014					
MUR PARPAING en bloc 20x50 avec ceinture haute et basse	M2	160	56,00	8 960,00	1
Crépi gratté rose	M2	110	30,00	3 300,00	1

Page 1 / 1

Echéance : Comptant (02/04/2014)

Mode de Règlement : Chèque

Tva	Taux TVA	Base HT	Montant TVA	Montant TTC
1	20%	12 260,00	2 452,00	14 712,00

Total TTC	14 712,00
R. Garantie 5%	735,60
A régler	13 976,40

위 송장은 Raymond주식회사가 COUZIN에 재화(mur paing와 crepi)를 각각 단가 56유로와 30유로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거래징수한 내역이다.

다. 전자영수증의 경우

전자영수증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명칭, 주소 및 기업의 활동, SIRET의 번호, 전산화 장소, 전송책임 부서조직 등을 작성하여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영수증은 원본으로 간주한다.[148]

영수증을 전자형태로 보내기를 원하는 기업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형태의 전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149]

모든 정보는 원본 상태로 보전되어 있어야 하고 규정에 따라서 발송회사의 발송대장 및 수취회사의 수취대장이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150]

한편, 2016년 11월 2일 데크레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종업원 수가 250명 이상인 사업체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 내 거래의 전자송장 사본을 보면 [그림 Ⅷ-2]와 같다.

148) CGI, 제286조 및 제289조.
149) CGI Annexe Ⅳ, 제4septies조.
150)「조세절차법」 제L102B조.

그림 Ⅷ-2 전자 송장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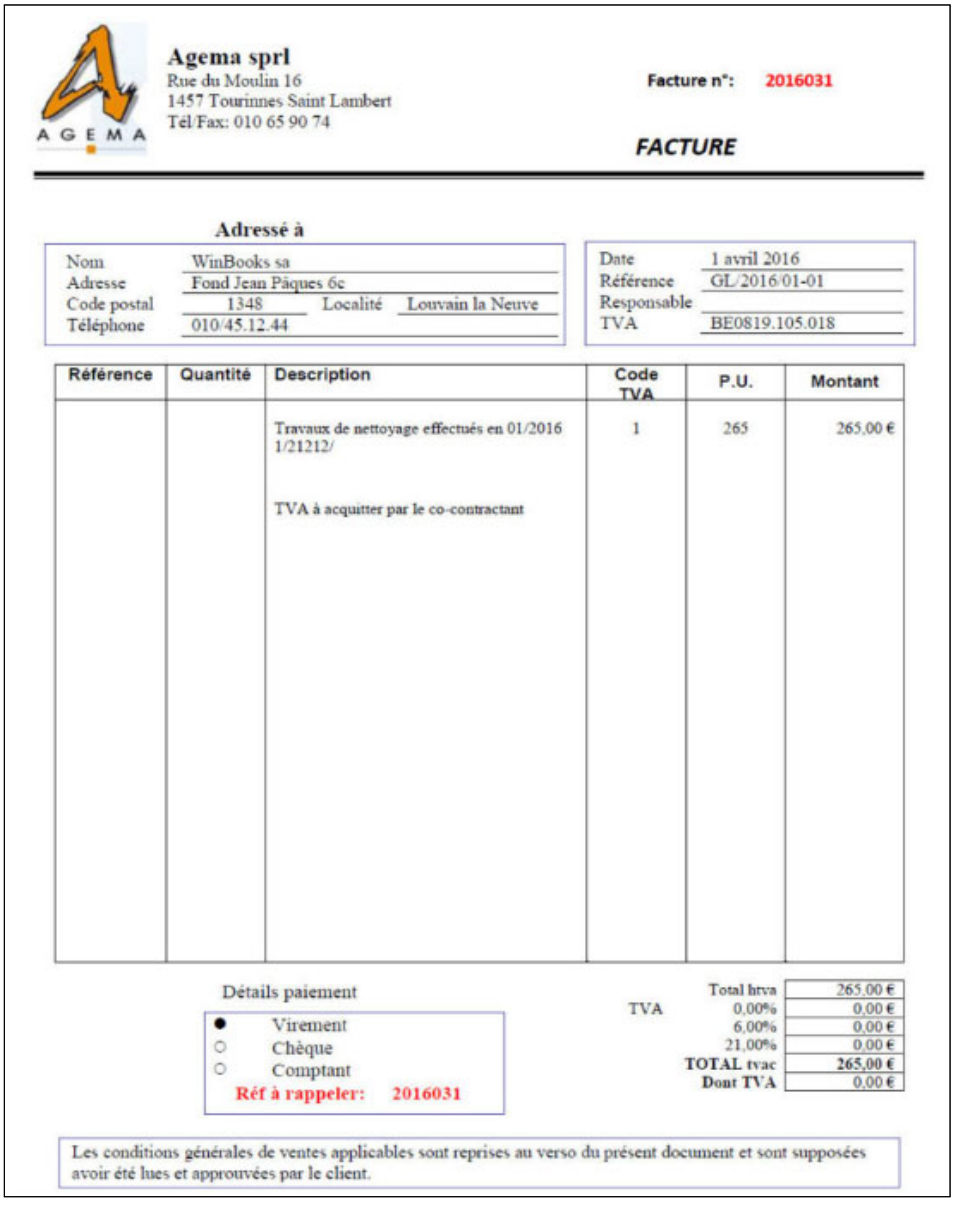

Agema sprl
Rue du Moulin 16
1457 Tourinnes Saint Lambert
Tél/Fax: 010 65 90 74

Facture n°: 2016031

FACTURE

Adressé à

Nom	WinBooks sa		
Adresse	Fond Jean Pâques 6c		
Code postal	1348	Localité	Louvain la Neuve
Téléphone	010/45.12.44		

Date	1 avril 2016
Référence	GL/2016/01-01
Responsable	
TVA	BE0819.105.018

Référence	Quantité	Description	Code TVA	P.U.	Montant
		Travaux de nettoyage effectués en 01/2016 1/21212/ TVA à acquitter par le co-contractant	1	265	265,00 €

Détails paiement

- ● Virement
- ○ Chèque
- ○ Comptant

Réf à rappeler: 2016031

TVA		
	Total htva	265,00 €
	0,00%	0,00 €
	6,00%	0,00 €
	21,00%	0,00 €
	TOTAL tvac	265,00 €
	Dont TVA	0,00 €

Les conditions générales de ventes applicables sont reprises au verso du présent document et sont supposées avoir été lues et approuvées par le client.

위 전자 송장은 Agema sprl회사가 WinBook sa에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265유로를 청구한 내용이다.

라. EU 역내 회원국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영수증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중 EU 역내 회원국가 거래(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포함)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납세의무 확정일 다음 달 15일 이내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 중 면세 거래 및 신차 운송수단 거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증빙보관

위와 같은 거래 증빙자료는 발생일부터 6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바. 과세관청의 검증

1) 서류조사

과세관청은 우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송장에 대해 서류심사(contrôle sur pièces)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제출한 송장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또는 부합하는지를 주로 검토한다.

주로 발생하는 불일치 사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확정 시점과 관련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판단 기준의 차이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시점이다. 재화는 송장 발행일에, 용역은 지급일에 송장을 발행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다.

2) 회계검사

회계검사(vérification de comptabilité)는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서류(fichier des écritures comptables,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제출 및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과

정이다. 이 과정은 모두 서신으로 이루어진다.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처분을 하며, 납세의무자는 이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다.[151]

3) 세무조사

세무조사(examen de comptabilité)는 과세관청(DGFiP)의 세무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제출한 회계 관련서류(fichier des écritures comptables)와 증빙서류가 세법에 부합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등 현장에서 나와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세무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3 일반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가. 신고

일반과세자는 매달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첨부하여 신고(CA3 양식 사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과세대상 거래 금액 및 명세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아울러 일반과세자의 신고는 전산(télédéclaration)으로 하여야 한다. 전산신고 절차는 과세관청 홈페이지(EFI)에 직접 접속하거나 회계법인 및 기타 전산신고를 대행하는 업체(EDI)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간이신고자의 경우에는 매년 신고할 수 있다. 만일 역년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일까지(deuxième jour suivant le 1er mai N+1) 신고하여야 한다.

납부면제자[152]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동시에 매입세액 공제 혜택도 없다.

151) 자세한 내용은 안창남, 『프랑스 조세절차법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1. 참조.
152) 이는 소득세의 소규모기업과 과세제도(régime micro-entreprise)와 동일하다.

그러나 프랑스 밖의 납세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는 있다.

일반과세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24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CA3 양식에 의거, 전산으로 신고하고 전자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부할 금액이 4,000유로 미만인 경우 분기에 한번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고의 경우 제출할 내역은 과세대상 거래 및 비과세대상 거래 내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명세 및 납부할 세액 계산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은 개인납세의무자의 경우 이름 시작 알파벳 순서를,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SIREN)의 앞 두 자리 순서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153]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Ⅷ-3 부가가치세 지역별 신고기한

구분	소재지역	대표자 이름 시작 순서 (법인의 경우 SIREN 번호 시작 순서)	신고기한
개인 납세의무자	파리지역 및 파리 외곽지역 (Hauts-de-Seine, de la Seine-Saint-Denis, du Val-de-Marne)	A부터 H까지	과세기간 다음 달 15일
		I부터 Z까지	과세기간 다음 달 17일
	기타 지역	A부터 H까지	과세기간 다음 달 16일
		I부터 Z까지	과세기간 다음 달 19일
법인납세의무자 중 SARL, SNS 또는 SCS 형태 법인	파리지역 및 파리 외곽지역 (Hauts-de-Seine, de la Seine-Saint-Denis, du Val-de-Marne)	00부터 68까지	과세기간 다음 달 19일
		69부터 78까지	과세기간 다음 달 20일
		79부터 99까지	과세기간 다음 달 21일
	기타	모두	과세기간 다음 달 21일
법인납세의무자 중 SARL, SNS 또는 SCS 형태 법인	파리지역 및 파리 외곽지역 (Hauts-de-Seine, de la Seine-Saint-Denis, du Val-de-Marne)	00부터 74까지	과세기간 다음 달 23일
		75부터 99까지	과세기간 다음 달 24일
	기타	모두	과세기간 다음 달 24일

자료: 「조세일반법」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153) CGI Annexe Ⅱ, 제242조, 제242septies조 및 CGI Annexe Ⅳ 제39조.

나. 납부

부가가치세 납부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 시 자진납부(spontanément)하여야 하며, 간편신고자의 경우 매년 신고 시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출세액이 연간 4,000유로 이하인 경우 매 분기마다 신고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매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 달이 속하는 다음 달의 15일부터 24일까지 CA3 양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반과세자의 납부는 전산(télépaiement)으로 하여야 한다. 전산납부의 경우에는 SEPA라는 내부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같은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를 통해 확정한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적은 경우 해당 세액은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는다.

만일, 환급받을 세액이 760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고, 150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연말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납부 성격으로 전년도 납부세액의 55% 상당액은 7월에 그리고 40%는 12월에 납부한다. 그러나 전년도 납부세액이 1,000유로 이하인 경우 예정납부를 생략한다.

4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규정은 2015년 이후 대폭 개정되었다. 즉,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N-1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납부할 세액이 1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1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해당 납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은 중간예납의 경우처럼 두 차례에 걸쳐 미리 납부한다. 첫 번째 중간예납은 7월에 기존 납부세액의 55%를 12월에는 40%를 각각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5월 2일까지 CA12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납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납부할 세액은 N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N-1 사업연도에 이미 2차례에 걸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납세자의 고의적인 조세회피나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기업이나 (entreprises nouvelles du secteur du bâtiment) 일시적으로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매달 신고 또는 분기별 신고를 2년 동안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과세자와 같은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계산 사례〉

간이과세자 B가 N 사업연도에 CA12 양식을 통해 신고한 거래요소는 아래와 같다.

(단위: 유로, 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금액
판매	200,000
자가공급(부동산)	50,000
구입	70,000
중간예납	10,000

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구분	내역
매출세액	
(+)	매출액 200,000×부가가치세율 20%=40,000
소계	40,000
매입세액	
(-)	매입액 70,000×부가가치세율 20%=14,000
(-)	자가 공급 부동산 50,000×부가가치세율 20%=10,000
소계	24,000
중간예납	10,000
납부할 세액	40,000-24,000-10,000=6,000 (매출세액의 합계) - (매입세액의 합계)

그리고 N+1 사업연도 중간예납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0,000유로를 기준으로 하여, 7월에는(40,000×55%)를, 12월에는(40,000×55%)를 납부한다.

5 기장의무와 증빙작성의무

모든 납세의무자는 그들 자신 또는 그들 사업목적으로 다른 EU 회원국에서 「조세일반법」 제256조 제3장 a, b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용된 경우에는 그 거래 명세를 장부에 적어야 한다. 특히, 모든 임가공업자는 발주자의 주소와 이름, 작업의 성질 및 작업형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용역제공 사업자는(임가공업자 제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발송된 재화의 경우 그 나라의 사업자 관련 번호, 수취일, 발송일, 주문을 낸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각 거래를 기재할 경우 일자, 판매품목의 명칭, 서비스 제공의 명세 및 판매가격과 구매가격, 또는 중개수수료, 수수료, 급여, 임대료, 이자, 할인액, 웃돈 또는 기타 이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면제자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서 매년 간편기장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구매명세, 매일의 거래명세, 용역수입, 구매영수증 및 거래명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되어야 한다.

6 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 후 15일 이내에 과세관청(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 CFE)에서 사업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영수증, 세관신고서, EU 역내 거래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표기된다. 휴업 및 폐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154]

7 그룹 법인의 신고 및 납부

「조세일반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갖춘 그룹 법인(Direction des grandes entreprises)의 경우에는 해당 그룹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155] 이 제도를 선택하는 법인은 이 제도의 적용을 신고할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154) CGI Annexe Ⅳ, 제32조 또는 제36조.
155) 이 제도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유사함.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모회사(société mère)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자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모회사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Ⅸ. 기타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2. 영수증 관련 연대납세의무

Ⅸ. 기 타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가.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대리납부

프랑스 이외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프랑스에서 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리자의 선임을 담당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위와 같은 대리인이 없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해당 과세거래의 받는 이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나. 대리납부

조세일반법 제259A조의 제3호, 제4bis호, 제5호 및 제6호의 거래 및 프랑스 이외의 국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제259B조에 열거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받는 자가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은 용역을 받는 자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156]

2 영수증 관련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영수증 또는 관련 서류에 언급된 모든 사업자는 영수증 등 발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또는 관련 서류가 재화의

156) CGI, 제283조 제2항.

공급 또는 용역의 실행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산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발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저작권자와 공연인 및 예술인 과세

가. 일반원칙

저작자(auteurs des oeuvres de l′esprit), 공연인(artistes-interprète) 및 배우(articles du spectables) 배우예술인들이 독립적으로 유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157], 고용인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158]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L111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가 보호되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도서, 드라마 각본, 악보, 미술품, 사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159]

공연인은 「저작권법」 제L212조 제2항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관중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맡은 자로, 성악가, 피아니스트 등을 포함한다.

이들 거래에 적용하는 세율을 5.5%이다. 그러나 연간 외형금액이 42,9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franchise) 대상이 된다.[160] 한편, 교육과정이나 수강생들이 경비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161]

157) CGI, 제256조, 제256A조 및 제266조 제1항 제a호. BOFiP-TVA-BASE-10-20-40-30 제160조(13/01/2014).
158) BOFiP-TVA-CHAMP-10-10-60-20(12/09/2012). 반면, 고용된 예술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59) FIDUCIAIRE, *Guide de la TVA*, 제4판, Group Revue Fiduciaire, 2019, pp. 1013~1014.
160) CGI, 제293B조 제3항.
161) CGI, 제261조 제4항 제4호.

나. 과세제도

예술품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162] 이 경우 마진이란 재화의 판매가격에서 구매가격과의 차액을 의미한다.[163] 한편, 중개업자가 창작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정확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의 30%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164]

162) CGI, 제297B조. 자세한 내용 : 본 보고서의 유럽연합편, 제Ⅲ장 제14절 다호 참조.
163) 제315조.
164) CGI, 제297A조 제3항.(원문)Pour les livraisons d'oeuvres d'art, lorsqu'il n'est pas possible de déterminer avec précision le prix d'achat payé par un assujetti revendeur au vendeur ou lorsque ce prix n'est pas significatif, la base d'imposition peut être constituée par une fraction du prix de vente égale à 30 % de celui-ci.

X.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X.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에 주는 시사점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면세범위의 축소이다. 프랑스 부가가치세제상 면세 범위는 공공성이 있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거래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수의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면세 거래를 대폭적으로 과세로 전환하되, 급격한 세금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세율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거래증빙 및 입증의 유연성이다. 우리나라는 과세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에 손해가 없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 측면도 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세금계산서 제도를 송장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확정 시점의 일치다. 우리나라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확정 시점에 차이가 있다. 이 기간을 악용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세관청의 신속한 개입을 위해서라도 성립 시점과 확정 시점의 일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구글 등 디지털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소비세 성격의 GAFA세를 부과하는 등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행정 및 제도를 갖추고 있다(EU는 2021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분야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EU 회원국 대부분은 OECD 회원국이다. 생각해볼 점이다.

참고문헌

안창남, 『프랑스 조세절차법 연구』, 한국세무사회, 2001.

안창남, 「EU 회원국과 프랑스와 부가가치세의 조화과정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23집 제2호, 2007.

Béatrice et Francis Grandguillot, *La fiscalité française 2018*, 제23판, Gualino, 2018.

Thierry Cours, Florence Bernal et Françoise Soulé, *Guide de la TVA,* 제4판, Groupe Revue Fiduciaire, 2018.

Jean Lamarque · Olivier Négrin · Ludouic Ayrault, *Droit fiscal général,* 제4차 개정판, LexisNexis, 2016.

J. Laferrière et M. Waline, *Traité élémentaire de science et de législation financières*, LGDJ, 1952.

부 록

프랑스 「조세일반법」상 부가가치세 내용 및 해당 조문

구분	내용	조문
지역 적용 범위	유럽연합의 적용지역	제256-O조
적용 범위	과세대상 거래	제256조 내지 제257bis조
	선택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래	제260조 내지 제260CA조
	면세거래	제261조 내지 제263조
납세의무자	정상납세의무자	제266조 내지 제268ter조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제269조
부가가치세징수	일반원칙	제270조
	공제	제271조 내지 제273septiesC조
	불공제	제275조 내지 제277A조
세율	표준세율	제278조
	감면세율 등	제278-Obis조 내지 제279bis조
납세의무자 의무	사업장 신고 및 기장의무	제286조
	납세의무자 의무 예외사항	제286bis조
	사업자등록번호	제286ter조
	사업자등록	제286quarter조
	부가가치세 신고	제287조
	송장 규정(한국의 세금계산서)	제289-O조 내지 제289조

구분	내용	조문
	프랑스 내 납세대리인	제289A조
	EU 역내거래 신고	제289C조
	EU 역외거래에 대한 환급요청	제289D조
	농업 사업자	제290bis조
	공연 사업자	제290quater조
	부동산 사업자	제290quinquies조
재화의 수입		제291조 내지 제293Abis조
납부면제		제293B조 내지 제293G조
특별규정	outre-mer 지역 부가가치세	제294조 내지 제296ter조
	course 지역 부가가치세	제297조
	중고품, 예술품, 안티크 제품 거래	제297A조 내지 제297G조
	석유제품	제298조
	운송수단(신차, 중고차)의 역내거래	제298sexis조 내지 제298sexiesA조
	신문 잡지	제298septies조 내지 제298sexdecies조
	담배제조	제298quaterdecies조 내지 제298sexdecies조
	금 투자	제298sexdeciesA조 내지 제298sexdeciesE조
	전자상거래	제298sexdeciesF조 내지 제298sexdeciesG조
디지털 기업	GAFA세	제299조 내지 제300조

| 저자 약력 |

안 창 남

- 프랑스 제2대학 법학박사
- 세무사회 등 자문위원
- 현, 강남대학교 세무학 전공교수

손 승 연

- 프랑스 공인회계사
- 프랑스 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 Audit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I

- 부가가치세 -

프랑스 편

발 행	2019년 12월 27일
발 행 인	김유찬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TEL: (044)414-2114(代)
홈 페 이 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디자인 범신
I S B N	978-89-8191-992-4 943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